

다국적기업 이자공제제도 개선방향 연구

2016. 12.

홍성훈 · 정재호

서 언

다국적기업 그룹은 여러 나라에 소재한 계열사들의 지배 구조와 거래 구조를 복잡하게 조직하고 운영한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운영하는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계열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인세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그룹은 이자비용 공제, 전략적인 이자율(이전가격) 산정, 혼성금융상품 거래, 거주국 과세이연 등을 결합하여, 계열사 간 차입거래 및 이자지급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

이자비용 공제 남용을 통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세법에 두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와 관련된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엄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이자비용 공제제도는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에 한도를 설정하여, 한도를 넘어서는 차입금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를 법인 소득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한다. 하지만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는 차입금 비율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익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두 비율을 모두 고려하여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OECD/G20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프로젝트에서도, 이자비용 공제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이자비용 비율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용하도록 권고하기도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계 주요 다국적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차입금 비율 또는 이자비용 비율이 실효세율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차입금 비율과 실효세율 사이의

통계적 관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이자비용 비율과 실효세율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분석과 함께 다양한 국제조세 환경하에서 다국적기업 그룹의 재무구조가 국제적으로 부담할 세금의 합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 모형에서도 다국적기업 그룹의 저세율국 계열사가 원천국 자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의 형태로 소득을 이전받도록 하여 국제적인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원천국은 자회사의 이자비용 비율 한도를 조정하여 세원 잠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인 제도 비교, 실증 분석, 이론 분석을 토대로 저자들은 우리나라의 현행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를 차입금 비율 기준에서 이자비용 비율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OECD/G20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다수의 국가에서 이자비용 공제 남용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홍성훈 박사와 정재호 박사가 함께 집필하였다. 집필 과정에서 저자들은 원 내외의 전문가들로부터 조언과 도움을 받고 익명의 심사자들로부터도 심사 의견을 받아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들은 자료 수집 및 정리에 큰 도움을 준 윤민기 연구원, 안승연 연구원, 조승수 회계사와 유현영 회계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이 본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보고서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16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다국적기업은 여러 나라에 소재한 계열사들의 지배 구조와 거래 구조를 복잡하게 조직하고 운영한다. 그러므로 다국적기업을 여러 계열사들을 포함하는 기업 그룹으로 볼 수 있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계열사들이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조세전략은 국가마다 상이한 세법과 조세조약에서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국가별 세법과 조세조약을 이용하기 때문에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법 규정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법의 원래 취지 및 법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관점과 배치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최근 주요국의 정부와 OECD/G20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회피 전략에 남용될 여지가 있는 취약한 국제조세제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OECD/G20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프로젝트이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양한 조세전략 중에서도 특히 계열사 간 차입거래 및 이자지급을 통한 조세회피 전략을 방지하는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먼저 다국적기업 그룹이 계열사 간 차입거래 및 이자지급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자. 기업은 차입 또는 출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차입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한다. 그런데 많은 국가에서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할 때 이자를 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체로 배당에 대해서는 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업은 재무구조를 선택할 때 출자금보다는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자비용을 공제받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아무리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차입금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재무 건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치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는 것처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차입금을 조달하여 재무적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차입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가 특수관계인(즉 대주주 또는 계열사)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이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경우 계열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고, 계열사 소재국의 법인세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국적기업 그룹은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있는 계열사가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장기적으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국제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저세율국에 있는 계열사와의 차입 계약에서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보다 높게 책정하면 더 많은 수익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차입 계약을 할 때 부채·자본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지급국(고세율국)의 계열사에서는 이자비용을 공제받으면서 수취국(저세율국)의 계열사에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익금불산입 되도록) 하면, 이자 지급을 통해 이전된 소득에 대해 국제적으로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몇몇 다국적기업 그룹은 저세율국의 계열사에 소득을 유보하여(과세이연) 모회사의 소득이 감소하고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도 감소하여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세율국 계열사로부터 모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저세율국 계열사로부터의 차입과 자사주 매입을 결합하여, 거주국 조세회피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과세이연으로 인한 주식 가치 하락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국가별로 법인세율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자비용 공제, 전략적인 이자율(이전가격) 산정, 혼성금융상품 거래, 거주국 과세이연 등을 결합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이 계열사 간 차입거래 및 이자지급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즉 '과소자본세제'는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에 한도를 설정하여, 한도를 넘어서는 차입금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를 법인 소득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한다.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초과분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있어 상당히 강한 과소자본세제를 갖추고 있는 셈이지만, 최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제도의 형태와는 약간 동떨어진 점도 있다. 최근의 논의에서는 주로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로 한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소득(EBITDA;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소득)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비율을 계산할 때 개별 기업 기준으로 보거나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보는 방법 등 다양한 한도 설정 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OECD/G20의 BEPS 방지 프로젝트의 Action 4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다.

미국은 1986년부터 소득잠식(earnings stripping) 방지 규정을 도입하여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50% 이하인(이른바 '세이프 하버' 규정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비용 공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EBITDA의 50% 이하로만 이자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50%를 초과하는 이자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독일은 2008년부터 소득잠식(earnings stripping) 방지 규정을 도입하였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독일 계열사가 그룹의 평균적인 부채비율을 감안한 기준(그룹 평균 부채비율에 2%p를 더한 값)보다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EBITDA의 10% 이하이면 공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상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EBITDA의 30% 이하인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고, 30%를 초과하는 이자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은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 및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모두 기준으로 삼는다. 2013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처럼 출자금 대비 차입금

의 비율만을 기준으로 하였고, 2013년부터는 두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공제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이 3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분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과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분 이자지급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의 이자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이자비용 공제제도를 비교하면, 공제를 제한하는 기준을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로 삼느냐 또는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로 삼느냐에 따라 제도를 큰 틀에서 구분할 수 있으며, 차입 또는 이자 지급의 대상을 특수관계인으로만 제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각각의 기준 비율을 어느 수준에서 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제도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마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기준이 다르다면, 과연 각각의 기준이 다국적기업의 실효적인 세금 부담과 어떤 상관성을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국적기업의 부채(차입금) 비율, 이자비용 비율과 실효세율 사이의 실증적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만약 각각의 비율 기준이 실효세율과 음(-)의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인다면, 각각의 비율을 기준으로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여(즉 각각의 비율을 낮추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여)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증 분석을 위해 톰슨 로이터스 아이콘(Thomson Reuters Eikon)에서 추출한 미국계 주요 다국적기업(S&P 500 지수 구성 기업) 그룹의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 미국계 다국적기업 그룹은 대부분(98%) 이자비용 공제 한도인 EBITDA의 50% 이하에서 이자를 지급하였다. 한편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이 약 5% 정도 있었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은 적어도 25% 정도 있었다.

실증 분석에 앞서 다국적기업 그룹의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증가하면 실효세율은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였고, 실증 분석 결과는 이러한 전망을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보는 경

우와 회계기준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 모두에 있어, 이자비용 비율이 증가할 때 실효세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무형자산 및 연구개발비 비중을 통제하면 이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덧붙여 다국적기업 그룹이 세이프 하버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실효세율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불확실하나, 만약 대다수 다국적기업이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여기서 분석한 결과만으로는 대체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확신하기 어려웠고, 제한적으로만 음의 상관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단순히 세이프 하버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부채) 비율과 실효세율 사이의 관계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실증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조세 환경하에서 다국적기업 그룹의 재무구조가 국제적으로 부담할 세금의 합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 모형에서는 두 계열사가 각각 거주국의 모회사와 원천국의 자회사로 있는 상황을 가정하였고,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거주국의 과세방식에 따라 경우를 구분하였다.

먼저 거주국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때는 통상적인 세율 조건하에서 원천국 자회사의 재무구조가 다국적기업 그룹의 전 세계 세금 부담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세율 조건하에서는 거주국에서의 법인세율이 충분히 높아서 차입을 통해 원천국에서 절감한 세금만큼을 거주국에서 다시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주국에서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때는, 즉 참여면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을 때는, 거주국 법인세율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원천국에서 차입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하여 국제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었다. 특히 거주국의 법인세율이 원천국의 법인세율과 배당소득 원천세율을 합산(gross-up)한 세율보다 작은 경우, 다국적기업 그룹은 원천국 자회사가 차입거래를 통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었다.

이러한 모형에서 모회사를 저세율국에 소재한 중간지주회사 또는 자금조달 전문 계열사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다국적기업 그룹은 저세율국에 있는 자금조달 계열사가 원천국 자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의 형태로 소득을 이전받도록 하여 국제적인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원천국은 자회사의 이자비용 비율 한도를 조정하여 세원 잠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국은 이미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비용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자비용 공제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룬 OECD/G20의 BEPS Action 4 최종 보고서에서도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 제도 운용을 권고하였다. 미국계 주요 다국적기업 그룹의 재무제표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에서도 다국적기업 그룹의 실효세율과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 사이에서 음(-)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론 분석에서도 다국적기업 그룹이 저세율국에 소재한 자금조달 전문 계열사로부터의 차입 거래를 이용하여 국제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원천국은 이자비용 비율 한도를 낮추어 세원 잠식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만약 이러한 제도 전환에 따른 기업 경영상의 혼란과 추가적인 세금 부담 우려를 줄이고자 한다면, 미국 과소자본세제의 세이프 하버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을 마치 세이프 하버 규정처럼 남겨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이 2배 이하이어서, 현행 규정에 따라 모든 이자지급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던 다국

적기업 그룹의 우리나라 계열사는 고스란히 모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도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 부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차입금 비율이 2배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계열사는,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한 한도에 따라,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이자지급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 한도마저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 이자지급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하면,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이 한도인 2배를 초과하면서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한도 역시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계열사만 모든 이자지급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한도를 어느 수준에서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자비용 공제가 제한되는 기업이 결정되겠지만, 통상적인 한도에서 공제가 제한되는 기업의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으로 이자비용 공제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자비용 공제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의 물꼬를 튼 보고서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직도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주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 만약 제도 전환을 검토한다면, 다국적기업 그룹의 우리나라 계열사에 대한 재무 자료를 수집하여 구체적인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한도에 따라 제도 전환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여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7
II. 다국적기업 이자공제제도 현황	23
1. 우리나라 제도 현황	23
2. 주요국 제도 현황	25
가. 독일	26
나. 일본	33
다. 미국	39
라. 호주	41
마. 국제비교	44
3. BEPS Action 4 최종보고서	49
가. BEPS 개요	49
나. BEPS Action 4 논의 배경 및 내용	51
4. 기본모형에 따른 제도 비교분석	53
가. 3국 모형	54
나. 추적 규정(tracing rule)	55
다. 소득 잠식 규정(earnings stripping rule)	56
라. 배분 규정(formula apportionment)	57
마.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	57
바. 시사점	58
III. 다국적기업 재무구조와 실효세율에 대한 실증 분석	59
1. 가설 설정	60
가. 세이프 하버 규정이 없는 경우	60

나. 세이프 하버 규정이 있는 경우	62
2. 분석 방법	63
가. 분석 시나리오	63
나. 분석 변수	64
3. 자료	66
가. 분석 대상 기업자료	66
나. 자료의 기술통계	67
4. 분석 결과 및 시사점	72
가. 분석 결과	72
나. 시사점	77
IV. 국제조세제도와 다국적기업 재무구조에 따른 세부담 분석	80
1. 거주지 과세원칙과 다국적기업 재무구조	81
가. 차입이 없는 경우	81
나. 차입이 있는 경우	82
2. 원천지 과세원칙과 다국적기업 재무구조	85
가. 차입이 없는 경우	85
나. 차입이 있는 경우	86
다. 시사점	88
V. 결 론	90
참고문헌	95

표목차

〈표 II-1〉 독일 법인세법 KStG 8a(1)과 유럽공동체법 Art. 43 EC	31
〈표 II-2〉 과소자본 규정과 소득잠식 방지 규정의 비교	38
〈표 II-3〉 이자비용 한도초과액 계산방식	43
〈표 II-4〉 전 세계 부채 계산방식	44
〈표 II-5〉 우리나라와 일본의 과소자본 규정	45
〈표 II-6〉 일본과 독일의 자본잠식(earnings stripping) 규정	46
〈표 II-7〉 주요국들의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비교	48
〈표 II-8〉 BEPS 과제(Action)별 주요 이슈	50
〈표 II-9〉 과제별 이행 강제력 수준	51
〈표 II-10〉 3국 모형의 가정	54
〈표 III-1〉 기술 통계	68
〈표 III-2〉 주요 변수의 분포	71
〈표 III-3〉 현금 실효세율, 이자비율 및 부채비율: 분석 결과	72
〈표 III-4〉 현금 실효세율, 이자비율 및 부채비율: 분석 결과	73
〈표 III-5〉 회계기준 실효세율, 이자비율 및 부채비율: 분석 결과	75
〈표 III-6〉 회계기준 실효세율, 이자비율 및 부채비율: 분석 결과	76
〈표 IV-1〉 다국적기업 합계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전액 출자	82
〈표 IV-2〉 다국적기업 합계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부분 출자(부분 차입)	83
〈표 IV-3〉 다국적기업 합계 세액: 경영참여소득면세와 전액 출자	86
〈표 IV-4〉 다국적기업 합계 세액: 경영참여소득면세와 부분 출자(부분 차입)	87

그림목차

[그림 1-1] 애플의 자사주 매입과 부채비율 추이	19
[그림 11-1] Lankhost 사례	30
[그림 11-2] 독일 이자비용 공제 구조	33
[그림 11-3] 일본 지주회사를 이용한 투자구조	35

I. 서론

다국적기업은 여러 나라에 소재한 계열사들의 지배 구조와 거래 구조를 복잡하게 조직하고 운영한다. 그러므로 다국적기업을 여러 계열사들을 포함하는 기업 그룹으로 볼 수 있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계열사들이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조세전략은 국가마다 상이한 세법과 조세조약에서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국가별 세법과 조세조약을 이용하기 때문에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법 규정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법의 원래 취지 및 법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관점과 배치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최근 주요국의 정부와 OECD/G20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회피 전략에 남용될 여지가 있는 취약한 국제조세제도를 보완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OECD/G20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프로젝트이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양한 조세전략 중에서도 특히 계열사 간 차입거래 및 이자지급을 통한 조세회피 전략을 방지하는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전략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에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먼저 다국적기업 그룹이 계열사 간 차입거래 및 이자지급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자. 기업은 차입을 통하거나(즉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출자를 통해(즉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한다. 차입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한다. 그런데 많은 국가에서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할

때 이자를 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체로 배당에 대해서는 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업은 재무구조를 선택할 때 출자금보다는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자비용을 공제받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아무리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차입금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재무 건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치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는 것처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차입금을 조달하여 재무적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차입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가 특수관계인(즉 대주주 또는 계열사)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이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경우 계열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고, 계열사 소재국의 법인세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¹⁾ 그러면 다국적기업 그룹은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있는 계열사가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장기적으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국제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저세율국에 있는 계열사와의 차입 계약에서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보다 높게 책정하면 더 많은 수익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차입 계약을 할 때 부채·자본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지급국(고세율국)의 계열사에서는 이자비용을 공제받으면서 수취국(저세율국)의 계열사에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익금불산입 되도록) 하면, 이자 지급을 통해 이전된 소득에 대해 국제적으로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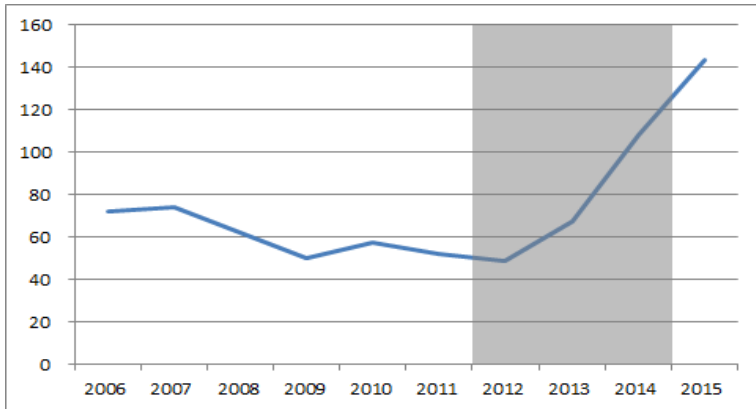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몇몇 다국적기업 그룹은 저세율국의 계열사에 소득을 유보하여(과세이연) 모회사의 소득이 감소하고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도 감소하여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세율국 계열사로부터 모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저세율국 계열사로부터의 차입과 자사주 매입을 결합하여, 거주국 조세회피

1)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 법인세법」 최고 과세구간의 명목세율은 35%이고, 아일랜드의 명목 법인세율은 12.5%이다. 케이만 군도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명목 법인세율은 약 24%이다.

의 대표적인 방법인 과세이연으로 인한 주식 가치 하락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략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차입을 통하지 않고서도 자사주 매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자사주 매입 이후 상승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애플(Apple Inc.)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였고, 부채비율은 2012년 48.94%에서 2015년 143.37%로 증가하였다. [그림 I-1]은 애플의 연도별 부채비율 추이와 자사주 매입 발표 시기를 보여준다.

[그림 I-1] 애플의 자사주 매입과 부채비율 추이

(단위: %)



자료: 애플(Apple Inc.) 홈페이지(www.investor.apple.com(검색일자, 2015. 7. 15))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정리하자면, 국가별로 법인세율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자비용 공제, 전략적인 이자율 (이전가격) 산정, 혼성금융상품 거래, 거주국 과세이연 등을 결합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이 계열사 간 차입거래 및 이자지급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자비용 공제 남용을 통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조세회피 전략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자비용 공제 제한제도와 관련된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실증 분석 및 이론 분석을 토대

로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즉 '과소자본세제'는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에 한도(2배)를 설정하여, 한도를 넘어서는 차입금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를 법인 소득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한다.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초과분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있어 상당히 강한 과소자본세제를 갖추고 있는 셈이지만, 최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제도의 형태와는 약간 동떨어진 점도 있다. 최근의 논의에서는 주로,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로 한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소득(EBITDA; 이자, 세금, 감가상각 비용 차감 전 소득)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과소자본세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차입금 비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이자비용 비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의 제도적 설계 및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과소자본세제 현황을 살펴보고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동향도 살펴본다. 더불어 실증 분석과 이론 분석을 병행하여 과소자본세제의 효과를 분석한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조세회피와 이자공제 전략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본다. 다국적기업의 이자공제 전략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재무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자공제 전략에 대한 연구는 법적·제도적 연구와 더불어 다국적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구자가 다국적기업의 재무구조, 조세회피, 이자공제 전략, 이자공제제도를 아울러 연구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uettner et al.(2012)는 독일계 다국적기업 그룹 및 계열사에 대한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과소자본세제가 해외 계열사(자회사)들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계열사가 소재한 나라의 과소자본세제가 계열사 간 차입 거래(즉 특수관계인 부채)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차입 거래를 늘리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uettner and Wamser(2013)는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계열사 간 차입 거래를 더 많이 하며, 거주국과 원천국 사이의 세율 차이가 커질수록 계열사 간 차입 거래를 더욱 많이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득 이전이 궁극적으로 전 세계에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저세율국 계열사에 소득을 이전하면 계열사(즉 국외 종속회사;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유보소득이 증가하고, 독일의 CFC 규정에 의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소득이 증가하여 이자 공제를 통한 소득 이전의 세금 절감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Desai et al.(2004)은 다국적기업 계열사의 재무구조와 세율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분석 결과, 원천국 세율이 10% 증가할 때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이 약 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율이 높아지면서 부채비율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계열사 간 차입 거래가 외부 차입 거래보다 세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특히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거나 채권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영업하는 계열사의 경우에는 외부 차입 거래를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다국적기업이 외부 자본시장의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 자본시장을 더욱 활발히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Desai and Dharmapala(2015)는 지금까지 국제기구, 정책전문가, 연구자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다국적기업 이자공제제도에 대해 정리하면서, 제도적 특징, 한계,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국적기업 이자공제 제한 규정으로서 추적 규정(tracing rule), 소득 잠식 규정(earnings stripping rule), 배분 규정(formula apportionment),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추가적으로 종합 사업소득세(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와 법인 자본비용 공제(allowance for corporate capital)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와는 다르게 Haufler and Runkel(2012)은 게임이론

적인 조세경쟁 모형을 수립하여 과소자본세제 도입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조세경쟁 모형에는 두 국가와 다수의 다국적기업이 있다. 두 국가는 명목 법인세율과 과소자본세제의 특수관계인 부채비율 한도를 선택하면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경쟁한다. 다국적기업은 이 두 국가가 아닌 제3의 조세회피처에 특수관계인(계열사)를 두고,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부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부채비율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과세 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개별 다국적기업은 세금을 최소화하는 투자 구조를 선택하여 투자한다. 즉 법인세율과 특수관계인 부채비율 한도를 모두 고려하여 세금 부담이 더 낮은 국가에 투자한다. 그리고 투자하기로 한 국가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자비용 공제가 가능한 한도까지 차입한다. 조세경쟁의 결과로 균형에서 두 국가는 모두 낮은 법인세율과 느슨한 공제 한도를 선택한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두 국가가 함께 과소자본세제를 강화하기로(즉 공제 한도를 낮추기로) 협의하면, 법인세율이 더 낮아지더라도 두 국가의 조세 수입이 모두 증가한다는 것도 보였다.

우리나라 연구자가 국제조세이론 또는 재정학의 관점에서 과소자본세제에 대해 연구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다만 과소자본세제와 조세조약의 법률적 관계, 금융업·비금융업 등 업종별로 상이한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문제, 부채·자본 혼성상품에 대해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문제 등을 조세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로 안경봉(1997), 이창희(2007), 이진영(2008) 등을 찾을 수 있었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에서 운용되고 있는 이자공제 제한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이자공제 제한제도에 대해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주요 논의 내용들을 살펴본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재무구조와 실효세율에 대해 실증 분석을 수행한다. 제Ⅳ장에서는 국제조세제도를 운용하는 과세원칙과 다국적기업의 재무구조에 따라 국제적인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요약과 함께 시사점을 정리한다.

II. 다국적기업 이자공제제도 현황

이 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관련 제도 현황을 비교 정리한다. 그리고 현재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BEPS Action 4에 대해 정리한다. 이어서 간단한 이론 모형과 사례를 바탕으로 다국적기업 이자공제제도와 조세제도가 기업의 세후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 우리나라 제도 현황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자비용의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²⁾,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³⁾,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 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그리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8조와 제52조는 투명하지 않은 또는 부당한 이자비용 등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공제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공제와 연계된 규정으로,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B2%95%EC%9D%B8%EC%84%B8#undefined> (검색일자: 2016. 4. 6.)

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B2%95%EC%9D%B8%EC%84%B8#undefined> (검색일자: 2016. 4.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과소자본세제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의 간주자본제도를 언급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선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포함)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이다. 다만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⁴⁾.

여기서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및 그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⁵⁾,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그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을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⁶⁾⁷⁾.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B2%95%EC%9D%B8%EC%84%B8#undefined> (검색일자: 2016. 7. 6.)

5) 제3조(국외지배주주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2. 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3. 내국법인과 제2조 제1항 제4호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

6) 제3조(국외지배주주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있는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3. 제1호에 따른 본점 또는 제2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1호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B2%95%EC%9D%B8%EC%84%B8#undefined> (검색일자: 2016. 7. 6.)

그리고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⁸⁾

이와 같은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 한도는 2015년 이후부터 3배에서 2배로 낮추었다.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 한도가 강화되고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초과분은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면 우리나라는 상당한 강한 과소자본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후에 논의될 OECD BEPS Action 4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와는 상이한 제도이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1)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보며, 2)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간주자본 지급이자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뺀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

2. 주요국 제도 현황

기업은 여러 경영상 요인, 시장 환경 등을 감안하여 차입, 출자 등을 결정하고, 특히 다국적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열사 간에 회사채를 거래하여 법인세 고세율 국가에서는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저세율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

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B2%95%EC%9D%B8%EC%84%B8#undefined> (검색일자: 2016. 7. 6.)

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B2%95%EC%9D%B8%EC%84%B8#undefined> (검색일자: 2016. 4. 6.)

려는 유인이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문제는 전 세계 국가들이 동일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주요국들이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제도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가. 독일

독일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1994년부터 2008년 이전까지 모든 기업에 150~300%로 부채비율(차입/출자)을 적용하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였지만, 2008년 세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OECD BEPS Action 4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인 이자/소득 비율을 적용하여 EBITDA의 30%를 적용하는 이자제한제도로 전환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는 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용 차감 전 이익을 의미한다. 참고로 독일의 EBITDA 비율은 경제상황에 따라 변경되고 있다.

1) 제도변천¹⁰⁾

독일은 1980년대부터 과소자본제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92년 처음으로 과소자본제한제도를 도입하여 1994년부터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소자본제한제도를 2008년 이전까지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운영해 왔다.

독일은 1980년대부터 과소자본제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바 1987년 독일과세당국은 statement of practice에 따라 과소자본제한을 시도하였다. 특수 관계자로부터 부채나 자기자본 비율의 10% 이하로 자본을 도입한 경우 German General Tax Code 42에 따라 부채남용(abusive)으로 간주하였다. 부채남용으로 간주될 경우, 이자비용은 공제제한이 되지 않는 배당금 지불로 간주하여 과세하였다. 다만 은행업과 보험업은 특수 사업군으로 지정하여 이러한 과소자본세제에서 제외하였다.

10) 안세준·김준현·정훈(2014), pp.41~43; Stephan Eliers(2013), pp.125-127.

독일연방재정법원(Federal Fiscal Court)로부터 Statement of practice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과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1992년에 처음으로 체계적인 과소자본제한규정이 제정되었다(법인세법 8a 조항). 내국기업이 국외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지급금에 대해 부채/자본 비율이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였다(주식의 25% 이하).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개정된 법에서는 과소자본제한을 국내 및 국외 거주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지급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 제도에서는 국내 및 국외 주주가 회사자본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 이자지급금이 25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부채/자본 비율이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로부터 차입한 비영리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금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의제배당(constructive dividends)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독일 법인세 8a에서는 일종의 세이프 하버 조항(safe harbor rule)으로서 기업이 제3자로부터 특정 조건에 맞춰 차입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영리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기타 복합대출금융(hybrid debt financing)에 지급하는 이자지급금, 법인세법 8a에 해당하는 주주의 부채에 지급하는 이자로 판단이 되는 경우, 20%의 원천 배당세, 5%의 배당이익 과세항목에 해당, 계열사 또는 주주와 연관된 제3자로부터 차입한 대출에 대한 이자지급금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과소자본세제는 OECD 모델 혹은 EU법에 기본적으로 내재된 차별금지 조항과 충돌한다는 주장의 연구가 다수 존재해 왔다.¹¹⁾ 그리고 결과적으로 독일의 과소자본세제 규정은 2002년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Lankhorst-Hohorst case)¹²⁾에 의해 개정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주주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무처분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독일의 과소자본세제는 유럽공동체법(The EC Treaty)에서 제시된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 독일이 과소자본세제를 포기하고 현재 OECD BEPS Action 4에

11) Bruno Gouthiere, "A Comparative Study of the Thin Capitalization Rules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nd Certain Other States", *EUROPEAN TAXATION*, September-October 2005, pp.367~369.

12) <http://curia.europa.eu/juris/showPdf.jsf?docid=86106&doclang=EN> (검색일자: 2016. 8. 24.)

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인 이자/소득 비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전환하게 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Lankhorst-Hohorst 판결은 다음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2008년 이후에는 소득규모를 기준으로 이자공제를 제한하는 과세체제로 전환하였다.¹³⁾ 그 결과 연간 100만유로 이상 또는 EBITDA의 30% 이상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기업그룹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기업 그룹 내에서는 동일한 부채/자본 비율이 적용되었다.

독일은 2009년 금융위기로 공제제한조건을 확대하였다. 기존 이자비용이 100만유로에서 300만유로까지 공제제한을 확대하였고, EBITDA 이월적용 및 공제제한 예외대상도 역시 확대하였다.

2) 유럽사법재판소(ECJ) Lankhorst-Hohorst 판결 요지 및 평가¹⁴⁾

가) Lankhorst-Hohorst 판결(C.324-00) 요지

유럽사법재판소는 2002년 12월 12일 Lankhorst-Hohorst사가 독일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¹⁵⁾에서 독일의 과소자본세제로 인하여 EU 역내의 외국인 지분소유자의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국내의 지분소유자에 비해 차별되고 있으므로 독일 법인세법 제8a조가 EC 조약 제43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¹⁶⁾ 다시 말해, 독일의 과소자본세제규정이 설립의 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독일의 규정에 따르면, 독일이 아닌 국가에 있는 지배기업에게 지급한 이자는 배당으로 간주되지만, 독일에 있는 지배기업에게 지급한 이자는 배당으로 재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

13) 안세준·김준현·정훈(2014), pp.41~43

14) 유럽사법재판소, www.curia.europa.eu (검색일자: 2016. 7. 14.)

15) ECJ Decision Lankhorst-Hohorst, 12 December 2002, C-324/00.

16) 세계법제정보센터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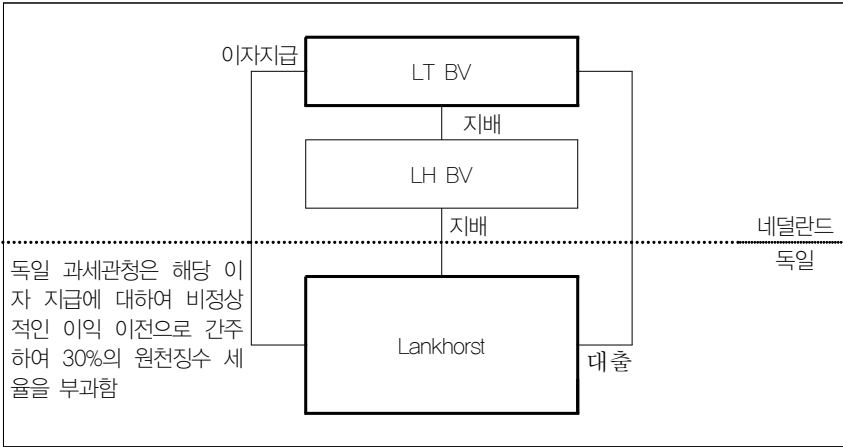
<http://new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DE/law/22800?pageIndex=8> (검색일자: 2016. 7. 19.)

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국내기업에게 국외기업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무차별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었다.

나) 사실관계

Lankhorst는 독일의 선박 부품 및 수상 장비 판매업을 영유하며,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LH BV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네덜란드에 소재하며, LH BV의 지배주주인 최상위 모회사 LT BV는 손자회사인 Lankhorst에 300만 독일 마르크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해당 차입금은 자본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제3의 채권자가 Lankhorst에 청구권을 행사하면 LT BV는 상환을 포기할 수 있었다. 독일 국세청(Finanzamt Steinfurt)은 Lankhorst가 국외 특수관계자인 LT BV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8a(1)에 의거한 이익의 비정상적인 이전으로 보아 30%의 원천징수 세율을 부과하였으나, 회사는 「유럽공동체법」 제43조 설립 자유의 원칙을 주장하며, 재무법원(Finanzgericht)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회사는 국외 주주를 이용하여 세율을 잠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자비용 절감 목적의 차입이라 주장하였으며, 과거 3년간 발생한 회사의 결손, 주주차입을 통한 금융기관 차입의 상환 등의 근거를 통해 이익을 이전하기 위해 주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독일 과세관청의 통지를 반박하였다. 이에 재무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유럽공동체법」 제43조의 해석에 대하여 판결을 요청하였다.

[그림 II-1] Lankhost 사례



자료: 저자 작성.

다)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쟁점 및 판결

유럽사법재판소는 각 과세관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직접적으로 과세되더라도, 회원국들은 일관되게 공동체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국적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피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독일 「법인세법」 8a(1)을 따르면, 종속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모회사의 설립 국적에 따라 세무처분의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세무처분의 차이는 「유럽공동체법」 제43조에서 금지하는 설립의 자유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례에서 주주차입은 금융기관 이자비용을 줄여 회사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고자 함이며, 차입금에 대한 어떠한 악용도 입증되지 않음에 따라,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된 거래로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유럽공동체법」 제43조(설립의 자유)는 독일 「법인세법」 8a(1)(이익의 이전)에 의한 조치를 배제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표 II-1〉 독일 법인세법 KStG 8a(1)과 유럽공동체법 Art. 43 EC

〈독일 법인세법 KStG 8a(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자본의 출납 즉, 이익의 비정상적인 이전(covert distribution of profits)으로 간주함

〈유럽공동체법 Art. 43 EC〉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서 회사를 설립할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금지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 설립된 기관, 지사, 자회사 등에도 적용되어야 함. 설립의 자유는 설립지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본과 관련된 규정의 규율을 받는 특정회사 혹은 자영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권리에도 적용되어야 함

자료: 유럽사법재판소, www.curia.europa.eu(검색일자: 2016.7.1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결과적으로 독일과 같은 과소자본세제(thin cap rule)는 다른 회원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만한 유인을 줄여 법인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의 종속회사의 설립, 취득 또는 존속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⁷⁾ 따라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로 인해 회원국 각각의 과소자본세제가 'EU test'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EU 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은 제도를 자국의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성이 발생하였다.¹⁸⁾ 이로 인해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범위를 국내 법인에 확대하거나, 또는 EU 회원국 거주 법인을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3) 독일 현재 이자공제제한제도의 특징¹⁹⁾ 및 문제점²⁰⁾

2008년 이후 개정된 세법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Zinsschranke)으로²¹⁾ 이는 모든 형태의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다. 당해 기

17) EUROPEAN TAXATION, Comments on ECJ, Lankhorst-Hohorst GmbH, Case C-324/00, 12 December 2002, May 2003 p.167.

18) Ana Paula Dourado & Rita de la Feria(2008), p.6.

19) 안세준·김준현·정훈(2014), pp.41~43를 바탕으로 작성

20) Stephan Eliers(2013), pp.130-140.

21) Stephan Eliers(2013), p.127.

업의 순이자비용이 기업의 EBITDA의 3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비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ITA 4h, CTA 8a). 다시 말해 연간 순이자비용은 EBITDA의 30%까지 인정된다. 독일의 국내기업과 독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외국기업 모두에 대해 규정이 적용된다. 뿐만아니라 해당 제한 규정은 주주차입, 특수관계자 차입 혹은 제3자 차입에 관계없이 모든 이자비용에 적용된다.²²⁾

EBITDA의 30%를 초과한 이자비용은 기간 제한 없이 한도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당해 연도에 이자비용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여유분은 향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부인된 이자비용은 배당으로 2차 소득 처분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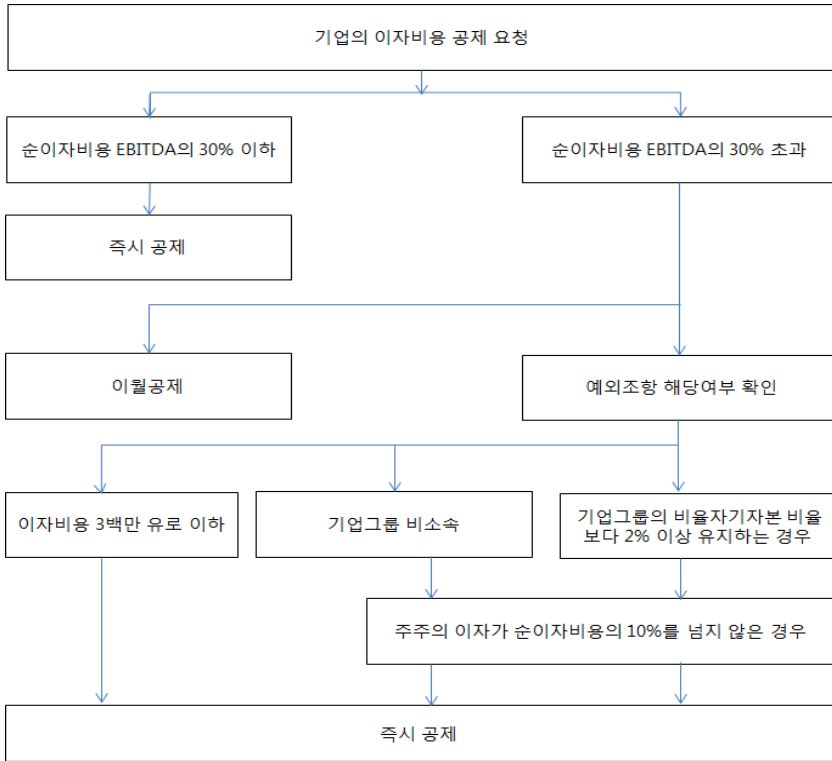
독일에서는 기업의 순이자비용이 연간 300만유로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계회사 기업 그룹에 속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공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전체 기업 그룹의 자기자본비율보다 2% 이상일 경우에도 일종의 세이프 하버 규정(safe harbor rule)처럼 이자비용 공제 제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²³⁾.

이러한 독일의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기업은 국제기준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편으로, 이자비용제한은 이러한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제한해 파산의 위험을 낮추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목적이 실질적으로 부합하느냐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금융위기와 시장상황에 따라 기업들이 부채를 스스로 낮추고 있으며, 바젤 III 등의 국제조약으로 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재무제표상 EBITDA에서 제휴사 수익(partnership profit)은 고정금리증권의 부채, 할인된 부채 등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이자비용을 결정함에 있어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22) PwC, *Worldwide Tax Summaries Corporate Taxes 2015/16*, p.721.

23) 안세준·김준현·정훈(2014), p.70.

[그림 II-2] 독일 이자비용 공제 구조



자료: Andrea Striegel, Country Survey-Germany, IBFD, 2008, p.328을 바탕으로 작성.

나. 일본²⁴⁾

일본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2013년부터 손익기준(이자/소득 비율)을 제한하는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1992년부터 운영하던 기존의 과소자본 규정(차입/출자 비율)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24) 주요 출처 KPMG, "Japanese Earnings Stripping Rules", *KPMG Japan tax newsletter*, 2012. 9. 6.

;Yoshihito Ueno, "Japan's Proposed Earnings Stripping Rules", *taxanalysts*, 2012. 1. 23.

;Japan-Corporate Taxation-Country Surveys - 10. Anti-Avoidance (검색일자: 2016. 7. 18.)

;The Japan Tax Site, <http://japantax.org/?p=453> (검색일자: 2016. 7. 20.)

1) 개관

일본은 세무상 이전가격 규정,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규정과 소득 잠식(earnings stripping) 방지 규정을 통해 국외 지급한 이자비용의 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이전가격 규정은 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소자본 규정은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소득 잠식(earnings stripping) 방지 규정은 손익을 기준으로 이자비용의 한도를 계산하고 한도초과분을 불공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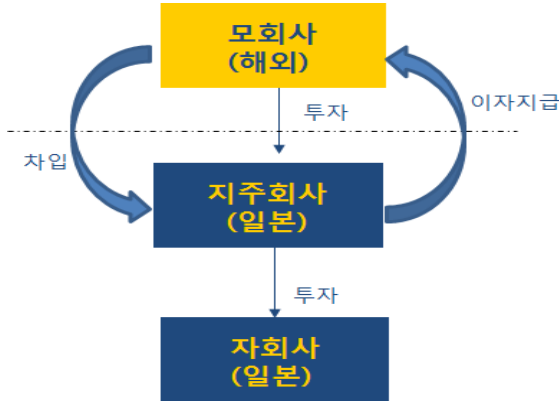
일본에서 과소자본세제 이외에 추가로 소득 잠식(earnings stripping) 방지 규정을 도입한 취지를 살펴보자. 일본에서 1992년 도입된 과소자본 규정의 경우 이자의 수취 대상을 국외 지배주주로 한정하고 있어 일본기업이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해외 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전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은 2012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잠식 방지 규정을 도입하고 적용대상을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해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특수관계인에게 이자지급을 통해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기업이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회사와 차입계약을 체결한 후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하자. 여기서 자회사가 과소자본의 적용대상인 국외 지배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회사면 이자지급을 통해 고세율 국가인 일본에서 저세율 국가로 제한 없이 이익을 이전할 수 있었다²⁵⁾.

제도의 도입 전후 민간에서 발행한 보고서²⁶⁾에 따르면 소득잠식 방지 규정의 도입으로 국외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일본 지주회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부채 규모가 자본의 3배 미만이어서 과소자본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일본 내 지주회사 중 과세소득이 크지 않은 기업은 소득잠식 방지 규정의 도입과 동시에 이자비용의 대부분을 공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5) Ueno(2012) p.291.

26) Ernst&Young, "2012 Japan tax reform proposals introduce earnings stripping rules," 2011.

[그림 II-3] 일본 지주회사를 이용한 투자구조



자료: Ernst&Young, "2012 Japan tax reform proposals introduce earnings stripping rules," 2012, p.2., www.eytax.jp/pdf/.../2011/Japan-tax-alert-December-2011-E.pdf (검색일자: 2016. 8. 24.)

이러한 일본의 소득잠식 방지 규정은 2012 세법개정안²⁷⁾에 포함되었으며 2013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었다. 일본은 과소자본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소득잠식 방지 규정을 도입해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둘 중 한도초과 금액이 큰 규정을 따른다.

2)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규정²⁸⁾

일본기업이 국외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중 부채 규모가 자본 규모를 일정 부분 초과하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비용이 불공제된다.

과소자본 규정은 크게 두 가지 부채비율을 요건으로 두고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 이자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 첫 번째 기준은 일본기업의 전체 부채비율(=부채/자본)이 3을 초과해야 하며, 두 번째 기준은 당기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평균액이 해당 주주의 자기자본의 3

27) 2012년 세법개정안은 일본정부가 2011년 12월 9일 발표함(출처: Ernst & Young, "2012 Japan tax reform proposals introduce earnings stripping rules")

28) 안세준·김준현·정훈(2014) pp.36~37 참조.

배를 초과해야 하며, 여기서 계산된 초과분에 대한 이자비용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의 과소자본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 지배주주는 다음의 네 가지 범주에 속하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다.²⁹⁾ 첫째, 일본기업³⁰⁾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이나 비거주자. 둘째, 일본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다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그 다른 기업(이하 '동일 주주의 지배를 받는 외국기업'이라 한다). 셋째, 일본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effective control or management control)를 행사하는 외국인과 외국기업. 넷째, 전술한 주주나 실질적 지배를 행사하는 자가 일본기업을 위해 지급보충한 상태에서 제3자를 통해 대여한 경우 지급보충인이나 대여인 등이다.

일본은 과소자본 규정을 2016년 개정하여, 일본 지점이 해외 본점에 지급한 이자비용도 과소자본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³¹⁾

3) 자본 잠식(Earnings Stripping) 규정³²⁾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이 조정 후 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당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이자공제 한도 초과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순이자비용에서 조정된 과세소득의 절반을 제외한 금액이다.

$$\text{이자공제 한도 초과} = \frac{\text{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순이자비용}}{\text{조종된 과세 소득}} \times \frac{1}{2}$$

29) Ueno(2012), p.292.

30) 여기서 일본기업은 일본에 소재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기업임.

31) IBFD, Japan Country Analysis: Japan, Corporate Taxation 10.3 Thin Capitalization 참조.

32) KPMG, "Japanese Earnings Stripping Rules," *KPMG Japan tax newsletter*, 2012, 9. 6, pp.1-5.

여기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순이자비용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에서 적격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이다

$$\text{이자공제 한도 초과} = \left(\text{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 \text{적격 이자수익} \right) - \text{조정된 과세소득} \times \frac{1}{2}$$

그리고 '적격 이자수익'은 총이자수익에 일정 비율(=총이자비용 대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의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때 국내 특수관계인³³⁾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의 경우 1) 국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일본 기업이 수취한 이자수익 2) 일본기업이나 국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국내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이자수익, 두 가지 중에서 작은 금액을 총이자수익으로 간주한다. 이는 기업이 국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순이자비용을 줄이거나 국내 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text{적격 이자수익} = \text{총 이자수익} \times \frac{\text{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text{총 이자비용}}$$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이 조정 후 과세소득 (adjusted taxable income)의 50%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이자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text{이자공제 한도 초과} = \left(\text{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 \left(\text{총 이자수익} \times \frac{\text{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text{총 이자비용}} \right) \right) - \text{조정된 과세소득} \times \frac{1}{2}$$

이러한 이자비용이 법정 한도를 초과해도 한도초과액을 소득에 가산하지 않는 두 가지 예외 규정이 있다. 첫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이

33) 일본 거주자인 개인이나 국내기업이거나 일본 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비거주자 개인과 외국기업을 의미함.

1,000만엔 이하이거나 또는 둘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이 총이자비용의 50% 이하인 경우이다. 총이자비용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로 일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 따라 과세된 이자비용은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이자비용은 이후 7년 동안 한도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적격 합병 시 소멸법인의 이자비용에 대한 한도초과액은 존속법인으로 승계된다.

일본에서는 미국과 같이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일정 한도 이하이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면책규정(safe harbor rule)은 없다.

4) 과소자본 규정과 소득 잠식(earnings stripping) 방지 규정의 비교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소자본제도와 소득잠식(earnings stripping)제도의 대상거래, 이자의 수취인, 한도초과 계산방법과 이월공제의 차이를 살펴보자.

〈표 II-2〉 과소자본 규정과 소득잠식 방지 규정의 비교

	과소자본	소득잠식 방지규정
대상	국외 지배주주에게 배당 대신 지급하는 이자비용	특수관계인에게 소득 대비 과다하게 지급된 이자비용
이자의 수취인	국외 지배주주 등(해외 자회사 제외)	국외 특수관계인(해외 자회사 포함)
이자공제 한도초과	부채가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한 부분에 상응하는 총이자비용	조정된 과세소득의 50%를 초과한 순이자비용
이월공제	해당사항 없음	이자공제 한도초과액은 향후 7년동안 한도미달액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공제
규정의 적용예외	해당사항 없음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이 1,000만엔 이하거나 총이자비용의 50% 이하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자료: KPMG, "Japanese Earnings Stripping Rules," *KPMG Japan tax newsletter*, 2012. 9. 6., p.6.

다. 미국

미국은 소득잠식(earning stripping rule) 방지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우선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이 미국연방소득세법의 목적상 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판단해야 하며³⁴⁾, 자본으로 재분류된 경우 해당 이자비용도 공제되지 않는다.³⁵⁾ 기업에 조달된 자금이 부채인지 또는 자본(equity interest)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1969년부터 발효된 IRC 제385조에서 제시하고 있다.³⁶⁾

미국에서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는 외국법인의 미국내 종속기업, 미국내 지점, 외국법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1)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개관

미국의 소득잠식 방지 규정은 기업에 초과이자비용(excess interest expense)이 발생하고 일종의 세이프 하버 규정(safe harbor rule)처럼 부채/자본 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³⁷⁾

IRC 제163조 (i)의 2항에서는 기업의 이자비용 공제제한을 초과이자비용, 부채-자본 비율, 비적격 이자비용으로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다.³⁸⁾ IRC 제16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초과이자비용(excess interest expense)은 해당 기업의 과세소득의 50%를 초과하는 순이자비용을 의미한다.³⁹⁾ 해당 기업이

34) IBFD,

(http://online.ibfd.org/kbase/#WT.z_nav=Navigation&colid=4916&topic=doc&url=/collections/cta/html/cta_us_s_001.html&hash=cta_us_s_1.4.5.) (검색일자: 2016. 10. 6.)

35) 미국법령정보시스템 163조(i)(2)항,

(<http://uscode.house.gov/view.xhtml?num=0&edition=prelim&req=granuleid:USC-prelim-title26-section163>), (검색일자: 2016. 10. 12.)

36) IBFD, United States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Surveys - 7. Anti-Avoidance - 7.3.1. General rule (검색일자: 2016. 10. 13.)

37) 미국법령정보시스템 163조(j)(2)(A)항,

(<http://uscode.house.gov/view.xhtml?num=0&edition=prelim&req=granuleid:USC-prelim-title26-section163>), (검색일자: 2016. 10. 6.)

38) 미국법령정보시스템 163조(j)(2)항,

(<http://uscode.house.gov/view.xhtml?num=0&edition=prelim&req=granuleid:USC-prelim-title26-section163>), (검색일자: 2016. 10. 6.)

이전 연도에 순이자비용이 과세소득의 50% 미만으로 한도미달액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초과이월한도 금액도 합산할 수 있다.⁴⁰⁾ 이와 같은 한도 이월은 3 과세기간 동안 이월할 수 있다.⁴¹⁾

미국세법상 비적격 이자비용(disqualified interest paid or accrued)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⁴²⁾ 첫째, 수취한 이자가 미국세법에 의해 과세되지 않는 특수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이자로 미국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 세율이 0%가 적용되는 국외 특수관계자가 대상에 포함된다.⁴³⁾ 둘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자비용 중 비적격보증이 이루어지고 수취한 이자비용이 미국세법상 과세되지 않은 경우다.⁴⁴⁾

163조 (j)(6)항에 비적격보증(Disqualified guarantee)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⁴⁵⁾ 조항에 따르면 미국세법에 의해 과세되지 않는 조직 또는 개인인 국외 특수관계자에 의한 보증을 비적격 보증으로 정의하고 있다.⁴⁶⁾ 비적격 보

39) 미국법령정보시스템 163조(j)(2)(B)항,
(<http://uscode.house.gov/view.xhtml?num=0&edition=prelim&req=granuleid:USC-prelim-title26-section163>), (검색일자: 2016. 10. 12.)

40) 미국법령정보시스템 163조(j)(2)항,
(<http://uscode.house.gov/view.xhtml?num=0&edition=prelim&req=granuleid:USC-prelim-title26-section163>), (검색일자: 2016. 10. 12.)

41) 미국법령정보시스템 163조(j)(2)(B)항,
(<http://uscode.house.gov/view.xhtml?num=0&edition=prelim&req=granuleid:USC-prelim-title26-section163>), (검색일자: 2016. 10. 12.)

42) 미국법령정보시스템 163조(j)(3)항,
(<http://uscode.house.gov/view.xhtml?num=0&edition=prelim&req=granuleid:USC-prelim-title26-section163>), (검색일자: 2016. 10. 12.)

43) IBFD,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highlight/collections/gtha/html/gtha_us_s_007.html&q=earning+stripping+earnings+stripings&WT.z_nav=Navigation&colid=4915)
(검색일자: 2016. 10. 11)

44) 미국법령정보시스템 163조(j)(3)항,
(<http://uscode.house.gov/view.xhtml?num=0&edition=prelim&req=granuleid:USC-prelim-title26-section163>), (검색일자: 2016. 10. 12.)

45) 미국법령정보시스템 163조(j)(6)(D)항,
(<http://uscode.house.gov/view.xhtml?num=0&edition=prelim&req=granuleid:USC-prelim-title26-section163>), (검색일자: 2016. 10. 12.)

중은 순과세 기준(net basis tax)을 적용한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과 지배지분의 8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보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⁴⁷⁾ 셋째,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자회사가 부동산투자신탁회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⁴⁸⁾

비적격이자비용은 초과된 이자비용의 금액으로 공제가 제한되며 이월공제는 되지 않는다.⁴⁹⁾ 이자비용공제 한도를 초과한 이자는 배당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하고 있다.⁵⁰⁾

라. 호주

1) 개관

호주는 이자공제 제한을 위해 과소자본규정을 운영 중이며, 소득 잠식(earnings stripping) 방지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호주의 과소자본규정에서는 부채비율(부채 대비 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이자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호주 과소자본규정의 주된 목적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나 해외기업의 국내투자 시 부채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⁵¹⁾

호주 과세당국은 2014년 7월 1일부터 부채비율 기준(세이프 하버 조항)을 낮추는 등 이자공제의 제한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기업의

46) 미국법령정보시스템 163조(j)(6)(D)항,
(<http://uscode.house.gov/view.xhtml?num=0&edition=prelim&req=granuleid:USC-prelim-title26-section163>), (검색일자: 2016. 10. 12.)

47) 미국법령정보시스템 163조(j)(6)(D)항,
(<http://uscode.house.gov/view.xhtml?num=0&edition=prelim&req=granuleid:USC-prelim-title26-section163>), (검색일자: 2016. 10. 12.)

48) 미국법령정보시스템 163조(j)(3)항,
(<http://uscode.house.gov/view.xhtml?num=0&edition=prelim&req=granuleid:USC-prelim-title26-section163>)(검색일자: 2016. 10. 12.)

49) 안세준·김준현·정훈(2014), p.44 재인용

50) Earnst&Young, 2016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p.1600.

51) IBFD, Australia-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is - 10. Anti-Avoidance - 10.3. Thin-Capitalization (검색일자: 2016. 10. 7.)

이자공제 제한을 위한 부채비율(세이프 하버 기준)을 기존 3배에서 1.5배로 개정했으며, 비율계산에 포함되는 대상 부채도 기존 특수관계 부채에서 모든 부채로 확대했다. 금융기관의 이자공제 제한 비율도 기존 20배에서 15배로 개정하고 부채가 정상가격으로 거래된 사실을 입증하면 과소자본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도 신설했다. 즉, 독립된 제3자와 동일한 거래조건 (terms and conditions)으로 부채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면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입장이다.⁵²⁾

또한 전 세계 부채비율(worldwide gearing test) 조항을 개정하면서 과소자본규정 적용대상도 조정하였는데, 호주 내 자산의 평균가치가 전 세계 그룹 자산의 100%(개정 전 120%)에 해당하면 과소자본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과소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자비용 기준금액을 기존 5만호주달러에서 200만호주달러로 상향 조정했다.⁵³⁾

2) 과소자본규정

호주의 과소자본규정은 특정 부채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식이다.⁵⁴⁾

해외 투자한 호주기업, 호주에 직접 투자한 외국기업과 외국기업의 지배⁵⁵⁾를 받는 호주기업⁵⁶⁾의 부채비율이 150%를 초과하면 과소자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⁵⁷⁾. 그리고 기준을 초과한 부채에 상당하는 이자

52) IBFD, Australia-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is - 10. Anti-Avoidance - 10.3. Thin - Capitalization (검색일자: 2016. 10. 7.)

53) IBFD, Australia-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is - 10. Anti-Avoidance - 10.3. Thin - Capitalization (검색일자: 2016. 10. 7.)

54) 호주 국세청, Thin capitalisation - Thinly capitalised entity, www.ato.gov.au/Business/Thin-capitalisation/ (검색일자: 2016. 10. 7.)

55) 비거주자가 호주 기업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IBFD, Australia-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is - 10. Anti-Avoidance - 10.3. Thin-Capitalization (검색일자: 2016. 10. 7.)

56) 호주 국세청, Thin capitalisation - Understanding thin capitalisation, www.ato.gov.au/Business/Thin-capitalisation/ (검색일자: 2016. 10. 7.)

57) 호주 국세청, Thin capitalisation - flowchart of who is affected,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⁵⁸⁾

〈표 II-3〉 이자비용 한도초과액 계산방식

$\frac{(1) \text{ 초과부채 (excess debt)}}{(2) \text{ 평균부채 (average debt)}} \times (3) \text{ 이자비용} = \text{이자비용 한도 초과액}$
<p>(1) 초과부채 = 조정된 평균 부채 - 최대 허용부채 조정된 평균부채는 이자비용을 발생시키는 모든 부채의 연간 평균액임 최대 허용부채는 세이프 하버 기준에 따른 부채(일반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1.5배(총자산 대비 60%), 금융기관의 경우 15배에 해당하는 부채금액)를 의미함</p>

자료: IBFD, Australia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is - 10, Anti-Avoidance - 10.3, Thin - Capitalization - 10.3.8, Formula, 10.3.10, Adjusted average debt, 10. 3. 11, Maximum allowable debt, 10. 3. 12, Safe harbour debt amount (검색일자: 2016.10.7.)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호주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 과소자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정상가격 기준, 전 세계 부채비율 기준과 200만호주달러 미만 이자비용의 경우에 적용이 제한된다. 정상가격 기준에서 살펴보면, 부채가 제3자 간 거래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된 정상가격임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그 부채에 대해서는 과소자본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⁵⁹⁾ 전 세계 부채비율 기준에서는 호주 내 부채비율이 전 세계 부채비율보다 적을 경우 과소자본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⁶⁰⁾ 즉, 호주 내 평균부채가 다음과 같이 전 세계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부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⁶¹⁾ 이 때 전 세계 부채의 범위는 호주기업과 호주기업의 피지배외국법인

www.ato.gov.au/Business/Thin-capitalisation/, 검색일자: 2016.10.7.)의 flow chart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함.

58) IBFD, Australia-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is - 10, Anti-Avoidance - 10.3, Thin-Capitalization (검색일자: 2016. 10. 7.)

59) IBFD, Australia-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is - 10, Anti-Avoidance - 10.3, Thin-Capitalization - 10.3.13, Arm's length debt amount (검색일자: 2016, 10. 7.)

60) IBFD, Australia-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is - 10, Anti-Avoidance - 10.3, Thin-Capitalization - 10.3.16, Maximum allowable debt - Worldwide gearing debt amount (검색일자: 2016, 10. 7.)

61) IBFD, Australia-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is - 10, Anti-Avoidance - 10.3, Thin-Capitalization - 10.3.16, Maximum allowable debt - Worldwide gearing debt

의 부채이며, 상호 차입한 금액은 제외된다.⁶²⁾ 마지막으로 이자비용이 200만호주달러 미만이면 과소자본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⁶³⁾

〈표 II-4〉 전 세계 부채 계산방식

$$\frac{\text{전 세계 부채비율} \times 100\%}{\text{전 세계 부채비율} \times 100\% + 1} \times \text{호주기업 총자산} = \text{전 세계 부채}$$

출처: IBFD, Australia-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is - 10. Anti-Avoidance - 10.3. Thin-Capitalization - 10.3.16. Maximum allowable debt - Worldwide gearing debt amount (검색일자: 2016.10.7.); 안세준·김준현·정훈(2014) p.49 참조.

마. 국제비교

1) 우리나라와 일본의 과소자본세제 비교

우리나라와 일본의 과소자본세제는 국내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차입 조건과 동일함을 입증하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수취대상의 범위와 한도계산 방법 측면에서 양 국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사전에 지배주주가 차입조건을 결정 시 과소자본 규정을 적용하나, 일본은 과소자본 세제와 함께 소득잠식(earnings stripping) 규정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차입을 제한하고 있다. 한도초과금액 계산에 사용되는 비율의 계산방법과 비율(우리나라는 2배, 일본은 3배 초과 시)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이전까지는 한도초과금액 비율을 3배로 적용하다가 2015년부터 강화하였다.

amount (검색일자: 2016. 10. 7.)

62) IBFD, Australia-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is - 10. Anti-Avoidance - 10.3. Thin-Capitalization - 10.3.16. Maximum allowable debt - Worldwide gearing debt amount (검색일자: 2016. 10. 7.)

63) Australia-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is - 10. Anti-Avoidance - 10.3. Thin-Capitalization (검색일자: 2016. 10. 7.)

〈표 II-5〉 우리나라와 일본의 과소자본 규정

구분	우리나라	일본
적용대상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대상 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 포함)로부터의 차입금 -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
국외 지배주주의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 사전계약이 존재하며, 차입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 시¹⁾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소자본세제 적용 	해당 사항 없음
부채/자본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부채비율(=부채/자본)이 3배를 초과하고,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평균액이 해당 주주의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²⁾
국내거래 적용여부	국내 거래에 적용하지 않음	국내 거래에 적용하지 않음
정상가격기 준 등 고려	통상적인 경우를 입증하면 배제가능	통상적인 경우를 입증하면 배제가능
한도초과분 2차소득처분	배당, 기타사외유출	해당 사항 없음
한도초과분 이월공제	이월되지 않음	이월되지 않음

주: 1)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차입조건 결정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

2)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

자료: 안세준·김준현·정훈(2014), pp.36~37; IIFD, Country Analysis: Japan, Corporate Taxation 10.3 Thin Capitalization.

2) 일본과 독일의 자본잠식(earnings stripping) 규정 비교

일본과 독일의 자본잠식(earnings stripping) 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자비용의 범위에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이자가 포함되는가 여부이다. 일본의 자본잠식(earnings stripping) 규정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이자비용에 적용되나, 독일의 규정은 발생한 모든 이자비용에 적용된다. 이외에 이자비용의 한도초과 계산 방식, 한도초과 및 미달분에 대한 이월공제 방식, 세이프 하버 규정(safe harbor rule)의 적용 여부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표 II-6〉 일본과 독일의 자본잠식(earnings stripping) 규정

구분	일본	독일
적용대상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대상 차입금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¹⁾	특수관계자 뿐만 아니라, 제3차 차입금도 포함
국내차입금의 적용여부	적용하지 않음	적용함
제한 비율	조정 후 과세소득의 50%	EBITDA의 30%
한도초과분 이월공제	7년간 이월공제	기간제한 없이 가능
한도미달분 추가이월공제	적용하지 않음	5년간 이월하여 추가 공제가능
주요 예외규정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이 연간 1천만엔 이하거나, 총이자비용 ²⁾ 의 50% 이하이면 규정 적용을 배제함	이자비용이 연간 3백만유로 미만이거나, 직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 지급된 이자비용이 순이자비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규정 적용을 배제함
면책규정(safe harbor rule)	해당 사항 없음	적용함 ³⁾
한도초과분 2차 소득처분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주: 1.)제3차 거래이나, 특정 요건(특수관계자 지급보증, back-to-back 대출 등)을 갖춘 경우 특수관계자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함.

2) 총이자비용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로서,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이자비용이 제외됨.

3) 해당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전 세계 기업그룹의 자기자본비율보다 2% 이상 높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

자료: 안세준·김준현·정훈(2014), pp.41~43, 45~48; IBFD, Country Analysis-Japan, Germany, Corporate Taxation, Thin Capitalization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주요국들의 관련 제도 비교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지만, 크게 구분해 보면 부채규모(차입/출자 비율) 또는 손익기준(이자/소득 비율)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전혀 운용하지 않는 국가들도 다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영국,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호주 등은 부채규모를 기준으로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는 손익기준을 이용하여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프랑스, 덴마크는 부채규모와 손익기준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고 있다.

부채규모를 기준으로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월공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캐나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비용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었다.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적용의 기준이 되는 부채비율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손익기준으로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적용의 기준이 되는 손익기준은 EBITA를 기준으로 하는 국가도 있었지만, 과세소득, 세무조정 후 과세소득, 세무조정 후 영업이익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독일에서는 해당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전 세계 기업 그룹의 자기자본비율보다 2%p 높으면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에도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덴마크의 경우에도 순금융비용의 크기가 일정한 금액 이하이면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일본을 비롯해서 프랑스, 덴마크에서는 부채기준과 함께 손익기준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부채규모와 손익기준 모두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그 기간을 20년까지 인정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표 II-7〉 주요국들의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비교

구분	부채규모 기준			손익기준		
	비율 기준	이월 여부	한도 초과	비율 기준	이월여부	주요 예외규정
우리나라	200%	×	배당			
영국	-	×	-			
캐나다	150%	×	배당			
중국	부채비율 200%	×	배당			
뉴질랜드	(부채/자산)비율 Inbound:60% Outbound:75%	×	-			
호주	(부채/자산)비율 60%	×	-			
독일	-			EBITDA의 30%	기간제한 없이 가능	전 세계 그룹의 자기자본비율 과 비교
이탈리아	-			EBITDA의 30%	기간제한 없이 가능	
미국	-			과세소득의 50%	한도미달 액만 3년	부채비율 150% 미만 시 배제
일본	300%	×	-	세무조정 후 과세소득의 50%	7년	
프랑스	150%	20년	-	세무조정 후 영업이익의 25%	20년	
덴마크	400%	×	-	적격자산의 4.2% 및 EBIT의 80%	EBIT에 따른 공제제한 만 이월	순금융손익 일정금액 이하 적용배제

자료: 안세준·김준현·정훈(2014), p.60~64 내용을 이용하여 저자들이 재작성.

3. BEPS Action 4 최종보고서⁶⁴⁾

가. BEPS 개요

다국적기업들이 내국세법과 국제조세 규범 간 불일치를 이용하여 공격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조세는 소득지·원천지 이중구조로 인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각 국가들이 과세권 확보를 위해 경쟁하면서 과소과세와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등 조세회피 틈새(loophole)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⁶⁵⁾ 그동안은 이중과세(double taxation)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조세회피로 인한 과소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국내기업과의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며, 재정적 건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⁶⁶⁾ 예를 들어 2015년 화이자(Pfizer) 제약과 엘러간(Allergan)과의 합병의 경우, 화이자 제약이 아일랜드에 기반을 둔 엘러간과의 합병을 통해 기존 납부했던 25.5%의 실효 법인세율을 17~18% 대로 낮춰 210억달러의 절세효과를 거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로 인해 미국에서도 법인세 회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논의되었다.⁶⁷⁾ 미국의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이 35%인 반면 아일랜드는 12.5%로 세율 차이가 크다. 미국 재무부는 2016년 4월 초에 조세회피 합병을 진행한 기업이 3년간 취득한 미국 자산을 인정하지 않는 규제안을 내놓았다. 미국에서는 지분율이 60%를 넘으면 미국 외부 발생수익에 대한 대출 제한 등이 제재가 적용되고, 80%가

64) OECD(2015a)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

65) 이찬근·김성혁(2015), pp.240~241.

66) OECD 대표부, BEPS 액션플랜 현황 및 쟁점 정리, <http://oecd.mofa.go.kr/korean/eu/oecd/policy/resultpaper/index.jsp> (검색일자: 2016.02.22.)

67) Financial Times, Vanessa Houlder and Vincent Boland, "Corporate tax: The \$240bn black hole," (검색일자: 2015, 11, 24.)
<http://www.ft.com/intl/cms/s/0/86567a32-91d5-11e5-bd82-c1fb87bef7af.html#axzz40qrsfLgM> (검색일자: 2016, 2, 22.)

넘으면 본사가 외국에 있더라도 미국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이 규제로 인해 화이자 제약은 법인세 회피가 어려워졌고, 결국 엘리간과의 합병을 포기하게 되었다.⁶⁸⁾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로 다국적기업이 세법 차이나 허점 또는 국가 간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잠재적 세원잠식 및 조세회피는 주로 합법적이지만 국제조세와 내국세의 모호한 경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

2012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BEPS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하였으며, 이후 OECD가 주도하여 OECD는 2013년 3월 19일에 BEPS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15가지 세부 BEPS 과제(Action)에 대해 권고안을 제시하였다.⁶⁹⁾

〈표 II-8〉 BEPS 과제(Action)별 주요 이슈

Action	주요 이슈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
Action 2	혼성불일치 효과 해소
Action 3	효과적인 CFC 규정 설계
Action 4	이자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
Action 5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유해조세제도 대응
Action 6	부적절한 상황에서의 조약혜택 부여 방지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 인위적 회피 방지
Action 8-10	정상가격 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
Action 11	BEPS 측정과 모니터링
Action 12	보고의무 규정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서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 효과 제고
Action 15	양자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

자료: 안중석(2016), p.14.

68) 중앙일보(2016. 4. 6), 「美 ‘조세회피용 M&A’ 강력규제...화이자-엘리간 직격탄」, <http://news.joins.com/article/19848260#none> (검색일자: 2016. 7. 5.)

69) OECD,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July, 2013; 안세준·김준현·정훈(2014), p.25.

한편 2015년 11월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BEPS 최종보고서를 승인하였다.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지만 Action별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권고사항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합의가 이행되는지 등을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다.⁷⁰⁾

BEPS 조치사항별로 이행 강제력에 차이가 있으며, 국가별 보고서 제출 서식, 무형자산 이전가격 적용, 이자비용 공제 제한 등의 일부 과제는 2020년까지 추가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⁷¹⁾

최소기준은 강한 이행 강제력을 가지며, 공통접근모범관행 관련 과제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차등 이행이 가능하다.⁷²⁾

〈표 II-9〉 과제별 이행 강제력 수준

이행수준		과제명
최소기준 (Minimum standard)	강제 이행 의무 부여	조약남용 방지, 유해조세 방지, 국가별보고서 도입, 효과적 분쟁해결
공통접근 (common approach)	강한 이행 권고	혼성불일치 해소, 이자비용 공제제한
모범관행 · 권고안 · 지침 (Best practice, Guidance, Recommendation)	선택적 도입 가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제적 보고 제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Ⅰ) -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 이행 과제」, 2015.11.19.

나. BEPS Action 4 논의 배경 및 내용⁷³⁾

Action 4에서는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금융비용에 대해 공

70) 안종석(2016), p.6.

7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Ⅰ) -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 이행 과제」 2015. 11. 19.

7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Ⅰ) -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 이행 과제」 2015. 11. 19.

73) OECD 대표부, BEPS 액션플랜 현황 및 쟁점 정리,
<http://oecd.mofa.go.kr/korean/eu/oecd/policy/resultpaper/index.jsp> (검색일자: 2016. 2. 22.)

제 한도를 설정하여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다국적기업들은 저세율국 계열사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고세율국 계열사에 대하여 고세율국 계열사는 세부담을 줄이고 저세율국 계열사로 이익을 이전하여 결과적으로 다국적기업 전체의 세부담을 줄여 과세를 회피하려고 한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한 세원 손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효율적인 자본 배분에도 왜곡을 불러일으키기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대응이다.

〈표 II-9〉에서 보듯이 Action 4는 BEPS 이행체계 분류에서 강한 이행을 권고하고 있는 공통접근(Common approach) 과제에 해당된다. 2015년에 발행한 OECD 보고서⁷⁴⁾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산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정비율법(fixed ratio rule)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업의 EBITDA 대비 고정된 비율(benchmark ratio)을 기준으로 이자비용을 산출하는 고정비율법은 국가별 이자율 차이, 이자율 변동폭 등 각 나라의 제도 및 상황을 고려해 10~30%의 범위 내에서 국가별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 이 같은 고정비율법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별 실정에 맞추어 고정비율법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 국가에 여러 자회사가 존재할 경우에는 기업의 EBITDA 대비 그룹 전체의 재무비율(group ratio)에 상당하는 개별 기업의 순이자비용까지는 공제를 허용한다든지, 최소허용보조기준 (de minimis threshold)을 적용하거나, 공공목적 사업을 위해 제3자로부터 대출을 이용한 경우, 향후 투자 등 미래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자금의 이자의 경우에는 이월한다든지 등 보완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세부적인 권고내용은 2016년 완료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과소자본세제는 출자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자비용 최다지급에 의한 세원잠식을 규제하기 때문에 OECD 권고안(EBITDA 고정비율법)과 차이가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에

74) OECD, BEPS 2015 Executive Summary, pp.15~17,

<http://www.oecd.org/ctp/beps-reports-2015-executive-summaries.pdf> (검색일자: 2016. 2. 19.)

서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OECD Action 4 적용에 대해 안종석(2016)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안종석(2016)에서는 Action 4에서는 거주지에서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소득 중 금융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무조건 원천지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어 원천지에서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⁷⁵⁾ 다른 하나는, Action 4에서는 금융비용을 제한하여 기업의 부채비율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기업의 활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⁷⁶⁾

4. 기본모형에 따른 제도 비교분석

이번 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기업의 이자공제제한제도의 유무(有無)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제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특정 이자공제제한 제도를 상정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국제기구, 정책전문가, 연구자 사이에서 다국적기업 이자공제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주로 언급되었거나 실제로 도입된 적이 있는 제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골라 비교한다. 추적 규정(tracing rule), 소득 잠식 규정(earnings stripping rule), 배분 규정(formula apportionment),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 등에 대해 살펴본다.⁷⁷⁾

75) 안종석(2016), p.21.

76) 안종석(2016), p.21.

77) Desai and Dharmapala(2015)에서 이자공제 남용행위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언급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가. 3국 모형

A국, B국, C국 세 국가에 각각 기업 A, 기업 B, 기업 C가 있고 가정하자. 기업 A와 기업 B가 차입을 통해(또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 C를 인수하려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기업 C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자금 100 만금이 필요하다. 기업 A와 기업 B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고, 자본시장 이자율은 r 이다. 만약 국제 자본시장이 경쟁적 이면 시장 이자율 r 은 개별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금 100을 시장 이자율 r 에 조달하므로 세전(공제전) 이자비용을 $100 \times r = R$ 로 표기한다.

이제 A국의 법인세 세율이 t_A 이고, B국 세율이 t_B , C국 세율이 t_C 라고 가정하자. 기업 A의 이익은 20, 자산은 200, 차입금은 150, 출자금은 50이라고 하자. 기업 B의 이익은 20, 자산은 200, 차입금은 100, 출자금은 100이라고 하자. 즉 기업 A와 B는 동일한 이익을 내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차입금과 출자금으로 구분되는 재무구조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인수 대상인 기업 C는 이익 10을 내고 자산 100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만약 기업의 이자공제를 제한하는 제도가 없다면, 각 기업은 이자 비용을 세전 소득에서 모두 공제받을 것이다. 이자비용을 소득에서 모두 공제하면, 세후 이자비용은 기업의 한계세율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기업 A의 세후 이자비용은 $R(1-t_A) = R_A^*$ 가 되고, 기업 B의 세후 이자비용은 $R(1-t_B) = R_B^*$ 가 된다. 여기서 기업의 한계세율이 더 높으면 세후 이자비용이 더 크게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0〉 3국 모형의 가정

국가	세율	기업	이익	자산	차입금	출자금
A	t_A	A	20	200	150	50
B	t_B	B	20	200	100	100
C	t_C	C	10	100	0	0

자료: 저자 작성

이제 기업의 이자공제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자공제제한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세후 이자비용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특정 제도를 상정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국제기구, 정책전문가, 연구자 사이에서 다국적기업 이자공제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주로 언급되었거나 실제 도입된 제도들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추적 규정(tracing rule), 소득 잠식 규정(earnings stripping rule), 배분 규정(formula apportionment),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 등에 대해 살펴본다.⁷⁸⁾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회원국은 대부분 소득 잠식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과소자본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추적 규정과 배분 규정을 현실에서 제도로 도입된 기록은 없지만, 이자공제 남용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존 연구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적이 있었던 것들이다.

나. 추적 규정(tracing rule)

다국적기업들의 이자공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추적 규정(tracing rule) 제도를 시행한다고 가정하자. 제도추적 규정 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기업 C를 인수하는데 투입한 투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자비용을 국가 C에서의 원천소득에서만 공제하도록 한다. 즉 자금을 차입한 기업이 있는 국가 A 또는 국가 B에서는 이자비용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기업 A와 기업 B가 각각 기업 C를 인수한 경우의 세후 이자비용은 $R(1-t_c) = R_c^*$ 가 된다. 즉 기업 C를 인수하기 위해 경쟁하는 기업 A와 B의 세후 이자비용이 동일하게 결정된다. 그리고 거주국의 조세제도(즉 A국과 B국의 조세제도)는 세후 이자비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세제도가 기업 간 경쟁에 중립적이라는 것은 제도적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국제적인 자금 흐름을

78) Desai and Dharmapala(2015)에서 이자공제 남용행위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언급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완전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추적 규정은 제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에서 도입된 사례가 없다.

다. 소득 잠식 규정(earnings stripping rule)

다음으로는 소득 잠식 규정(earnings stripping rule) 제도를 적용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소득 잠식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자/소득 비율)에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업의 소득은 출자금과 비교하여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이 일시적으로 실적 부진(earning shock)에 빠진 경우 소득이 적어 이자비용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세이프 하버’ 규정(safe harbor rule)을 두고 있다. 세이프 하버 규정에 따르면 출자금 대비 차입금 비율(차입/출자 비율)이 정해진 한도 이하이면, 이자/소득 비율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 잠식 규정하에서는 이자/소득 비율 한도가 얼마나 낮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기업이 이자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제 자본시장 이자율이 5%이고 (따라서 총이자비용은 5이고) 이자/소득 비율 한도가 30%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공제가능 이자비용 한도는 6이 되고, 이 한도는 총이자비용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기업은 이자/소득 비율 한도 내에서 모든 이자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후 이자비용은 각각 R_A^* 와 R_B^* 가 된다.

자본시장 이자율에는 변화가 없는데, 이자/소득 비율 한도가 20%로 하향 조정된 경우를 생각해보자. 한도가 낮아졌으므로 공제가능 이자비용 한도도 4로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기업은 이자비용 5 중에서 4만큼은 공제를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기업 A의 세후 이자비용은 $4(1-t_A)+1 > R_A^*$ 이 된다. 마찬가지로 기업 B의 세후 이자비용은 $4(1-t_B)+1 > R_B^*$ 이 된다. 한도가 낮아지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손금 부인된) 이자비용만큼 세후 이자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A와 B의 세후 이자비용은 각 기업의 거주국 세율(즉 t_A 와 t_B)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라. 배분 규정(formula apportionment)

다국적기업의 이자공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배분 규정(formula apportionment)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배분 규정 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이자비용을 국가별 자산 규모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하여 각 국가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대안적으로 국가별 소득 규모에 비례하여 배분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자산 비례 배분 규정을 예로 들어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기본모형에서 언급한 사례에서 기업 C를 인수한 이후 기업 A와 기업 B의 자산은 각각 300이 된다. 그리고 국가 A 또는 국가 B에서의 자산 비율은 2/3가 되고, 국가 C에서의 비율은 1/3이 된다. 기업 A가 기업 C를 인수한 경우 세전 이자비용 R 을 A국에 2/3만큼, C국에 1/3만큼 배분한다. 마찬가지로 기업 B의 이자비용도 B국에 2/3만큼, C국에 1/3만큼 배분한다.

그러면 기업 A가 기업 C를 인수하는 세후 이자비용은 $\frac{2}{3}R(1-t_A) + \frac{1}{3}R(1-t_C)$ 이 되고, 기업 B의 세후 이자비용은 $\frac{2}{3}R(1-t_B) + \frac{1}{3}R(1-t_C)$ 이 된다. 만약 $t_A > t_C$ 이고, $t_B > t_C$ 이면, 세후 이자비용이 각각 R_A^* 와 R_B^* 보다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상대적으로 법인세 세율이 낮은 국가(여기서는 C국)에서 이자비용을 공제하도록 하면 그만큼 기업의 세후 이자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를 적용할 경우를 살펴보자. 과소자본세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차입금/출자금 비율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비용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차입금을 정의할 때 그 범위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만 제한해 제도를 적용하기도 하고, 이러한 범위 제한이 없이 모든 차입금에 대해

적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한도 초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단순히 손금부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배당으로 간주하여 추가적으로 과세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제한이 없고 배당간주 규정이 없는 단순한 경우를 생각해본다. 그러면 앞선 3국 모형에서 언급한 사례에서 기업 A의 차입금/출자금 비율은 3이고, 기업 B의 비율은 1인 것을 볼 수 있다. 차입금/출자금 비율 한도가 2배이면, 즉 차입금이 출자금의 2배를 초과할 때 이자비용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면, 기업 A는 기업 C를 인수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전혀 공제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세후 이자비용은 세전 이자비용과 동일한 R 만큼이다. 반면 기업 B는 인수 자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 세후 이자비용은 R_B^* 가 된다.

바. 시사점

정리하면, 다국적기업이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자금 조달 비용(즉 세후 이자 비용)은 거주국에서의 한계세율과 이자비용 공제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거주국 세율이 더 높을수록 세후 이자비용은 더 많이 감소하고(즉 세율이 높을수록 소득 공제율이 더 높고) 공제 규정이 엄격할수록(즉 특수관계인 이외의 제3자 지급 이자도 공제를 제한하거나 공제 한도가 낮을수록) 세후 이자비용은 증가한다. 그리고 당연히 개별 기업의 재무구조에 의해서도 세후 이자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공제 한도를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하느냐에 따라 개별 기업의 세후 이자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 변화는 다국적기업의 경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Ⅲ. 다국적기업 재무구조와 실효세율에 대한 실증 분석

앞 장에서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때 다양한 방식의 비용 공제 제한(손금불산입)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주요국의 이자비용 공제 제한 규정들을 저량(stock) 비율을 기준으로 하느냐 또는 유량(flow) 비율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저량 비율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출자금 대비 차입금 비율이고, 유량 비율의 대표적인 예가 유럽연합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다.

사실 주요국의 과세당국들이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공제 제한 규정에서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독일이 2008년부터, 일본이 2013년부터 유량 비율을 기준으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있기 전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량 비율을 기준으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였다.

만약 이렇게 국가마다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기준이 다르고, 비교적 최근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면, 과연 각각의 기준이 다국적기업의 세금 부담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량 비율이 저량 비율보다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과 통계적으로 더욱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면, 유량 비율을 기준으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여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변화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재무구조와 실효세율 사이의 실증적 관계를 분석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 대상을 미국계 다국적기업으로 한정하여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및 차입금이 실효세율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공제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토의한다.

1. 가설 설정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은 하나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여러 계열사를 두고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그룹의 형태로 운영된다. 그리고 다국적기업 그룹의 계열사들 사이에는 서로 복잡하게 지배구조와 재무구조가 조직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 있는 계열사 사이에 지배구조와 재무구조가 복잡하게 조직되어 있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세금 절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할 때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공제할 수 있는 이자비용의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 또는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만약 다국적기업 그룹의 계열사가 소재한 국가들 사이에 법인세율에 차이가 있다면, 다국적기업 그룹은 계열사들의 재무구조를 조정하고 이자비용 공제제도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서 부담할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가. 세이프 하버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와 이자비용 공제제도를 이용한 국제조세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다국적기업 그룹이 두 국가 H와 L에 두 계열사 H와 L을 하나씩 두고 있다. 국가 H의 법인세율은 40%이고, 국가 L의 법인세율은 10%이다. 두 국가 사이의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0%이다. 국가 H에서는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기준으로 50% 이하까지 과세소득에서 이자비용을 공제하도록 허용한다. 즉 EBITDA의 50%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한편 다국적기업 계열사 H의 EBITDA는 100이고 계열사 L의

EBITDA는 0이다. 만약 다국적기업이 이자비용 공제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계열사 H는 40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계열사 L은 0의 법인세를 부담하여 전체적으로는 40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계열사 H가 계열사 L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계열사 H가 계열사 L로 이자 10을 지급하면,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10%가 되고, 이는 한도 이하이다. 그러므로 계열사 H는 이자 10을 소득에서 공제 받고, 나머지 소득 90에 대해 세율 40%로 법인세 36을 부담할 것이다.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0%이므로 원천세 부담은 없다. 계열사 L은 소득 10에 대해 세율 10%로 법인세 1을 부담할 것이다. 그러면 전반적인 법인세 부담은 37이 되는데, 차입 거래가 없을 경우의 법인세 부담 40과 비교하여 3만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두 국가 사이의 세율 차이(30%)에 이자 10을 곱한 것과 같은 값이다. 이처럼 이자비용 공제 한도 이하에서는 계열사 H가 계열사 L로 이자를 지급할수록 전반적인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이자 50을 지급하면, 계열사 H과 L의 소득이 각각 50이 되고, 법인세는 각각 20과 5이어서 전반적인 부담은 25가 된다.

한편 계열사 H가 계열사 L로 이자 60을 지급하면,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60%가 되어 한도 50%를 초과한다. 국가 H의 과세당국이 한도를 초과한 10%에 대해서는 이자비용 공제를 부인하기 때문에, 계열사 H는 이자 60 중에서 50만을 공제 받아 과세소득은 50이 된다. 한편 계열사 L은 이자 60을 받아 소득도 60이 된다. 그러면 두 계열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각 20과 6이어서 합계 26이 된다. 이자 50을 지급할 때 전반적인 법인세가 25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만큼 늘어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자소득을 받는 L국 세율 10%에 한도 초과로 공제 부인된 이자 10을 곱한 것과 같은 값이다. 이처럼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계열사 H가 계열사 L로 이자를 지급할수록 전반적인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수준은 L국의 세율에 비례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 L국의 세율이 0%라면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전반적인 세

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25에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국적기업 그룹이 계열사 사이에 더 큰 이자비용을 지불할수록 전 세계에서 부담하는 실효적인 법인세율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이라면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초과하도록 차입 거래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다국적기업의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증가하면 실효세율은 감소한다.

나. 세이프 하버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국가 H의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공제제도에 이른바 ‘세이프 하버’ 규정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세이프 하버 규정은 자기자본(또는 출자금) 대비 차입금 비율이 일정 수준,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50% 이하인 경우 이자비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므로 만약 세이프 하버 규정의 조건을 만족하면 다국적기업의 계열사는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법인세 부담도 감소할 것이다. 반면 세이프 하버 규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자비용 공제한도 이하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감소하지만, 한도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국적기업 그룹이 세이프 하버 규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효적인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 그룹이 세이프 하버 규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달리 말하면 차입금 비율이 더 높은 경우에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과세소득에서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 그룹이

세이프 하버 규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초과하도록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모든 이자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감소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상반된 세율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이 세이프 하버 규정의 비율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 하지만 만약 다국적기업이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초과하도록 차입거래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세이프 하버 규정의 비율을 초과할 때 실효세율이 감소한다.

다국적기업이 세이프 하버 규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이 그 자체로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도 확실하지 않다. 만약 여러 차입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상이하면 차입금과 이자지급액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차입금이 과세소득과 실효세율에 미치는 효과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분석 방법

가. 분석 시나리오

다국적기업의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 및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이 실효세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실효세율 변수를 두 가지로 살펴 보는데, 하나는 현금(실제 납부세액 기준) 실효세율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회계기준상 실효세율이다.⁷⁹⁾

각각의 실효세율을 종속변수로 가정하고, 이자비용 비율, 차입금 비율, 차

79) 현금 실효세율 변수는 Dyreng et al.(2008)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최근 여러 연구에서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었다.

입금 한도 초과 더미 등을 주요 독립변수로 가정한다. 추가적으로 매출액, 총자산, 총자산 대비 유형고정자산 비율, 총자산 대비 무형자산 비율,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가정한다.⁸⁰⁾

실효세율의 정의와 통제변수의 범위에 따라 모두 네 가지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 번째 경우에는 현금 실효세율을 종속변수로 가정하고, 이자비용 비율, 차입금 비율, 차입금 한도 초과 더미, 매출액, 총자산을 독립변수로 가정한다. 두 번째 경우에는 여기에 총자산 대비 유형고정자산 비율, 총자산 대비 무형자산 비율,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독립변수로 추가한다. 세 번째 경우에는 회계기준 실효세율을 종속변수로 가정하고, 이자비용 비율, 차입금 비율, 차입금 한도 초과 더미, 매출액, 총자산을 독립변수로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총자산 대비 유형고정자산 비율, 총자산 대비 무형자산 비율,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나. 분석 변수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와 주석으로 구성되며,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IS; Income Statement), 대차대조표(BS; Balance Sheet), 현금흐름표(CF; Cash Flow) 등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변수를 기업 i 와 연도 t 를 기준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다국적기업 i 가 연도 t 에 보고한 재무제표 자료로부터 다음과 같이 변수를 정의한다.

종속변수로 두 가지 실효세율(ETR; Effective Tax Rate) 변수를 가정한다. 먼저 현금 실효세율(Cash ETR) 변수는 특정 기업이 각 연도에 현금으로 납부한 세액의 합계를 Special Item 항목을 공제한 세전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즉 $\text{Cash Taxes Paid} / (\text{pretax income} - \text{special item})$ 으로 정의되고, 각각 현금흐름표(CF)의 Cash Taxes Paid, 손익계산서(IS)의 pretax income과 special item 항목을 근거로 계산하였다. 단위는 퍼센트(%)로 환

80) Gallemore and Labro(2015)는 내부정보의 질적인 수준이 기업의 현금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면서 상기 통제변수를 고려하였다.

산하였다. 그런데 기업의 세전이익이 너무 작거나 음(-)의 값(세전이익 기준 결손)을 갖는 경우에는 현금 실효세율 변수가 너무 큰 값을 갖거나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세율 변수임을 고려하면 값의 범위가 0에서 100 사이로 정의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실효세율이 음(-)이거나 100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상치를 통제하기 위해 앞에서 계산한 현금 실효세율 값을 0과 100에서 윈저화(Winsorized)하였다. 즉 0 미만의 값은 모두 0으로, 100을 초과하는 값은 모두 100으로 가정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현금 실효세율 변수는 Dyreng et al.(2008)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의 여러 연구에서도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되었다.

또 다른 실효세율 변수는 회계기준상 실효세율(GAAP ETR) 변수이다. 회계기준상 실효세율은 손익계산서(IS)의 법인세비용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단위는 퍼센트(%)이다. 현금 실효세율을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0과 100에서 윈저화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로서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InterestEBITDA)은 손익계산서(IS)의 이자비용을 EBITDA로 나눈 값이다. 단위는 퍼센트(%)이다. 그런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대상 계열사 간에 지급한 이자를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자비용은 특정 기업 그룹이 지급한 총이자비용보다 더 작을 것이다. 한편 ExcessIE는 터미 변수이고,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1로 정의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정의된다.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DebtEquity)은 대차대조표(BS)의 Total Debt을 Total Equity로 나눈 값이다. 단위는 퍼센트(%)이다. 대차대조표에서 Total Debt은 장·단기 차입금과 장·단기 금융리스를 합계하여 계산된다. 하지만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입채무나 미지급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Total Equity는 납입 자본금(출자금)과 함께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잉여금을 모두 합계한 것이다.

한편 기업의 부채를 차입금으로만 한정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매입채무나

미지급금을 모두 포함하도록 정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부채를 대차대조표에서는 Total Liabilities라고 부른다.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LiabEquity)을 Total Liabilities를 Total Equity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단위는 퍼센트(%)이다. 그리고 ExcessLE는 더미 변수이고,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50%를 초과하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정의된다.

나머지 통제 변수는 다음과 같다. 매출(Revenue)은 손익계산서(IS)의 Total Revenue 값으로 정의되고, 단위는 100만달러이다. 마찬가지로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이익(EBITDA)도 손익계산서에서 찾을 수 있고, 단위는 100만달러이다. 총자산(Asset)은 대차대조표(BS)의 Total Assets, Reported 값으로 정의되고, 단위는 100만달러이다.

한편 유형고정자산은 대차대조표(BS)의 Property/Plant/Equipment, Total Net 값으로 정의된다. 무형자산은 대차대조표(BS)의 Intangibles, Net 값으로 정의된다. 연구개발비는 손익계산서(IS)의 Research And Development 값으로 정의된다. 이상의 세 변수를 각각 총자산액으로 나누어 퍼센트로 환산한 값을 이용하고, 각각 PPEAsset, IntangAsset, RnDAsset으로 표기한다.

3. 자료

가. 분석 대상 기업자료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연결재무제표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대상을 S&P 500(Standard & Poor's 500)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미국 뉴욕 증시 또는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크고 업종 대표성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S&P 500 기업을 선정한다. 이들 기업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계열사가 세계 곳곳에 있는 다국적기업이다.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큰 자본수출국이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액만을 보더라도 미국이 가장 큰 자본수출국이다. 그러므로 미국계 다국적기업이 주요 계열사를 포함하여 어떤 재무구조를 보이며

이 재무구조와 실효세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는 작업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S&P 500 구성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톰슨 로이터스 아이콘(Thomson Reuters Eikon)에서 추출하였다. 2016년 7월 현재 S&P 500 구성 기업 중에서 아이콘에서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업은 모두 498개였다. 이 중에서는 은행업과 부동산투자신탁업(REIT)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하였다. 은행업의 경우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부채와 이자비용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거하였는데, 모두 17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었다.⁸¹⁾ 한편 부동산투자신탁업의 경우 납부하는 법인세가 없어 제거하였는데, 모두 25개 기업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었다.⁸²⁾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남은 기업은 모두 456개였다.

자료의 분석 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개년으로 하였고, 분석 대상 456개 기업의 연도별(즉 회사-연도) 관측치는 모두 4,444개가 되었다. 한편 290개의 회사-연도 관측치에서 EBITDA 값이 누락되어, EBITDA 값이 관련된 변수는 관측치가 4,154개가 되었다.

나. 자료의 기술통계

〈표 Ⅲ-1〉은 변수들의 기술 통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S&P 500 구성 기업이 지난 10개년 동안 달성한 실적을 살펴보자. 평균적으로 연간 총매출은 196억 8,935만달러, EBITDA는 35억 1,704만달러, 총자산은 397억 2,307만달러임을 볼 수 있다. 원화로 규모를 기늠하기 위해 환율을 1,100원/달러라고 가정하면, 총매출 약 21조 6,500억원, EBITDA 약 3조 8,700억원, 총자산 약 43조 7,000억원에 해당한다.

81) 자료에서 제외된 은행업 회사는 다음과 같다: FITB.O, USB, C, BBT, BAC, ZION.O, JPM, WFC, CFG, KEY, RF, HBAN.O, MTB, PBCT.O, CMA, PNC, STI.

82) 자료에서 제외된 부동산투자신탁 회사는 다음과 같다: HCP, VNO, AIV, PLD, AVB, PSA, EQIX.O, HCN, VTR, MAC, EXR, BXP, GGP, SPG, ESS, KIM, AMT, UDR, FRT, EQR, DLR, O, WY, SLG, HST.

〈표 III-1〉 기술 통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CashETR	4,444	24.96	297.41	-5,714.29	17,233.33
CashETRW	4,444	24.17	20.14	0.00	100.00
GaapETR	4,444	29.21	120.47	-1,113.07	6,575.00
GaapETRW	4,444	27.66	14.60	0.00	100.00
InterestEBITDA	4,154	10.80	60.04	-1,934.58	2,722.85
ExcessE	4,154	0.02	0.14	0.00	1.00
DebtEquity	4,444	74.25	1,178.28	-38,808.64	26,233.33
LiabEquity	4,444	231.49	2,388.27	-68,967.90	99,020.51
ExcessLE	4,444	0.49	0.50	0.00	1.00
Revenue	4,444	19,689.35	38,600.54	-6,840.00	485,651.00
EBITDA	4,154	3,517.04	6,523.73	-9,637.00	81,730.00
Asset	4,444	39,723.07	98,733.62	281.85	1,121,190.00
PPEAsset	4,356	22.54	22.75	-33.97	142.62
IntangAsset	3,568	8.44	9.61	-0.59	58.93
RnDAsset	1,549	5.77	6.07	0.00	86.33

자료: 저자 작성

평균적으로 현금 실효세율은 약 24.96%이었다. 미국 연방 법인세법상 최고 소득구간(1,833만달러 이상)에서의 명목세율 35%와 비교하면 실효세율 값이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결 재무제표에서 계산한 실효세율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다른 국가의 세율이 미국의 세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작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세율 차이 이외에도 다국적기업이 다양한 공제제도와 조세 전략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더 감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원저화한 현금 실효세율(Winsorized Cash ETR)은 평균적으로 24.17%이었다. 일반회계기준상 실효세율은 평균적으로 약 29.21%이었다. 원저화한 회계기준상 실효세율은 평균 약 27.66%이었다. 회계기준상 실효세율은 현금 실효세율보다는 높았지만, 여전히 미국의 명목 법인세율보다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InterestEBITDA)은 약 10.80%로

나타났다. 한편 이자비용 비율이 한도 50%를 초과하여, 한도 초과분 이자에 대해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전체 4,154개의 관측치 중에서 약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약 98%의 경우에 기업들은 모든 이자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관찰 결과는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이라면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초과하도록 차입 거래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예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설 2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이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초과하도록 차입거래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세이프 하버 규정의 비율을 초과할 때 오히려 실효세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은 평균 약 74.25%이고, 부채비율은 평균 약 231.49%이었다. 전체 관측치 4,444개에서 부채비율이 세이프 하버 조항의 한도 비율 1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약 49%에 이르렀다. 반대로 해석하면 51%의 관측치에서 기업은 세이프 하버 조항의 한도 150% 이하로 부채비율을 유지하였고,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이자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표 Ⅲ-2〉는 주요 변수의 분포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각 변수 기준으로 최상위 1%에 해당하는 기업의 실적을 보면, 즉 〈표 Ⅲ-2〉에서 99%에 해당하는 열을 보면 최상위 1% 기업은 적어도 해마다 총매출 1,688억 8,400만달러와 EBITDA는 353억 3,000만달러의 실적을 올리고, 총자산 6,202억 4,400만달러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을 1,100원/달러로 가정하고 원화로 환산하면, 총매출 약 185조 7,700억원, EBITDA 약 38조 8,600억원, 총자산 약 682조 2,700억원에 해당한다.

현금 및 회계기준 실효세율의 분포도 〈표 Ⅲ-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실효세율은 최하위 25%의 경우 약 8.63%이고, 최상위 25%의 경우 약 33.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값은 23.60%이다. 원저화 현금 실효세율에서도 사분위 값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회계기준 실효세율은 최하위 25%의 경우 약 21.22%이고, 최상위 25%의 경우 약 36.20%이었다. 중위값은 30.56%이다. 원저화 회계기준 실효세율에서도 사분위 값이 모두 동일하

게 나타났다. 두 실효세율 모두에서 최상 사분위(75%) 그룹에 속하는 경우 기업들은 미국 연방 법인세의 최고 구간 세율 35%에 가깝게 세금을 부담하였다.

그리고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최하 사분위(25%)에서 2.55%에 불과하였지만, 최상 사분위(75%)에서는 13.88%까지 증가하였고, 최상위 5% 그룹에서는 31.39%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만약 기업의 재무구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30%로 하향 조정한다면, 적어도 5% 이상의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만약 공제 한도를 10%로 더욱 낮춘다면, 적어도 25% 이상의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공제 한도가 변화할 때 기업들이 재무구조를 조정하여 이자비용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대체로 하향 조정된 한도에 맞춰서 이자비용도 줄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재무구조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한도 변화에 영향을 받을 기업의 비율을 어림잡는다면, 그 비율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OECD/G20의 Action 4 최종보고서에서는 각국의 정부가 과소자본세제에서 소득잠식 규정을 채택하는 경우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10%에서 30%에 이르는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제 한도를 낮출수록 더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한도가 30%로 낮아지면 적어도 5% 이상의 기업이 모든 이자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한도가 10%로 낮아지면 적어도 25% 이상의 기업이 모든 이자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을 것이다.

〈표 III-2〉 주요 변수의 분포

변수	Obs	1%	5%	10%	25%	50%	75%	90%	95%	99%
CashEIR	4,444	-132.17	-11.77	-0.47	8.63	23.60	33.81	44.21	57.88	171.60
CashETR _W	4,444	0.00	0.00	0.00	8.63	23.60	33.81	44.21	57.88	100.00
GaapEIR	4,444	-35.64	0.00	0.00	21.22	30.56	36.20	38.88	42.48	76.10
GaapETR _W	4,444	0.00	0.00	0.00	21.22	30.56	36.20	38.88	42.48	76.10
InterestEBITDA	4,154	-2.58	0.00	0.03	2.55	7.14	13.88	23.16	31.39	73.01
DebtEquity	4,444	-733.60	0.00	0.74	24.37	54.58	107.49	202.61	376.80	1150.25
LiabEquity	4,444	-1373.51	24.82	41.29	82.12	145.83	264.12	545.14	988.91	2253.67
Revenue	4,444	540.96	1358.24	1963.87	3660.10	8041.85	18352.00	46039.00	77776.46	168884.00
EBITDA	4,154	-46.32	260.00	413.73	748.57	1481.06	3495.00	7460.50	13115.00	35330.00
Asset	4,444	798.15	1838.31	2688.14	5234.76	13157.56	33724.00	77980.00	149743.00	620244.00

자료: 저자 작성.

4. 분석 결과 및 시사점

가. 분석 결과

먼저 인지와 현금 실효세율(Winsorized Cash ETR)이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부채 한도 초과 더미 등과 실증적으로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표 Ⅲ-3>의 회귀분석에서는 통제변수로 매출액과 총자산을 추가하였다.

<표 Ⅲ-3> 현금 실효세율, 이자비율 및 부채비율: 분석 결과

CashETRW	(1)	(2)	(3)	(4)	(5)
InterestEBITDA	-0.0073 (0.0058)	-0.0066 (0.0058)	-0.0072 (0.0058)		
DebtEquity				0.0003 (0.0002)	
LiabEquity	0.0000 (0.0001)				0.0000 (0.0001)
ExcessLE		-1.0816* (0.6358)			
Revenue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Asset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Constant	23.7829*** (0.3463)	24.2536*** (0.4221)	23.7904*** (0.3459)	23.8251*** (0.3393)	23.8381*** (0.3399)
Observations	4154	4154	4154	4444	4444
R-squared	0.00	0.00	0.00	0.00	0.00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significant at 10%;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

자료: 저자 작성.

이어서 <표 Ⅲ-4>의 회귀분석에서는 통제변수로 총자산 대비 유형고정자산 비율, 무형자산 비율, 연구개발비 비율을 추가하였다. 아쉽게도 톰슨 로이터스 아이콘에서 추출한 재무제표 자료에 무형자산 또는 연구개발비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항목이 누락된 관측치를 제외하였

기 때문에 <표 Ⅲ-4>의 회귀분석에서는 관측치가 약 1,350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4> 현금 실패세율, 이자비율 및 부채비율: 분석 결과

CashETRW	(1)	(2)	(3)	(4)	(5)
InterestEBITDA	-0.0079*** (0.0024)	-0.0080*** (0.0025)	-0.0079*** (0.0024)		
DebtEquity				-0.0009 (0.0017)	
LiabEquity	-0.0007 (0.0008)				-0.0007 (0.0008)
ExcessLE		0.7312 (1.2921)			
Revenue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Asset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PPEAsset	-0.0437 (0.0361)	-0.0483 (0.0370)	-0.0446 (0.0360)	-0.0482 (0.0364)	-0.0481 (0.0364)
IntangAsset	0.2714*** (0.0842)	0.2661*** (0.0845)	0.2710*** (0.0841)	0.2646*** (0.0846)	0.2646*** (0.0845)
RnDAsset	-0.4379*** (0.1136)	-0.4266*** (0.1129)	-0.4358*** (0.1134)	-0.4493*** (0.1138)	-0.4502*** (0.1138)
Constant	22.3701*** (1.4417)	22.1117*** (1.4362)	22.2803*** (1.4359)	22.5080*** (1.4576)	22.5585*** (1.4595)
Observations	1352	1352	1352	1357	1357
R-squared	0,04	0,04	0,04	0,03	0,03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significant at 10%;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

자료: 저자 작성

<표 Ⅲ-3>의 (1)부터 (3)은 각각 이자비용 비율을 포함하였고, 주요 독립 변수 중에서 추가적으로 (1)은 부채비율을 포함하고, (2)는 부채 한도 초과 더미를 포함하였다. 한편 (4)와 (5)는 이자비용 비율을 포함하지 않고 차입 금 비율과 부채비율을 각각 포함하였다. <표 Ⅲ-4>에서도 동일한 순서로 주요 독립변수를 조합하였다.

앞의 가설 1에서 실효세율과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음(-)의 관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만약 이자비용 비율(InterestEBITDA) 변수의 계수 추정값이 음(-)이라면,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한편 가설 2에서는 실효세율과 부채 한도 초과 더미 사이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예단하기 어렵지만 대다수 기업이 이자비용 공제한도 이하에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면, 부채 한도를 초과할 때 실효세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만약 부채 한도 초과 더미(ExcessLE) 변수의 계수 추정값이 음(-)이라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표 Ⅲ-3>의 (1)부터 (3)을 보면 이자비용 비율(InterestEBITDA) 변수의 계수가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추정된 음(-)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부호의 방향이 예상과 일치하긴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담보할 만큼 확실하게 가설 1을 지지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형자산 및 연구개발비 등의 추가적인 통제변수를 고려한 <표 Ⅲ-4>의 (1)부터 (3)을 보면 이자비용 비율(InterestEBITDA) 변수의 계수가 음(-)의 값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상당히 유의한 수준(1%)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무형자산 및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더욱 강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표 Ⅲ-4>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다국적기업이 이자비용 공제제도를 이용하는 조세전략을 통해 조세회피를 도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표 Ⅲ-3>의 (2)를 보면 부채 한도 초과 더미의 계수 추정값이 음(-)이고, 이러한 추정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 Ⅲ-4>의 (2)에서는 부채 한도 초과 더미의 계수 추정값이 반대의 부호를 보이고 이러한 추정값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를 실효세율과 부채 한도 초과 더미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가설 2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표 Ⅲ-4>에서 실효세율과 무형자산 비율은 양(+)의 관계를 보이고, 실효세율과 연구개발비 비율은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두 경우에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1% 수준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 아마도 무형자산의 비율이 높은 기업은 국외에서 사용료 소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취할 것이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미국에서의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국제적인 세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부담도 감소할 것이다.

이어서 원저화 회계기준 실효세율(Winsorized GAAP ETR)이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부채 한도 초과 더미 등과 실증적으로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표 III-5〉 회계기준 실효세율, 이자비율 및 부채비율: 분석 결과

GaapETRW	(1)	(2)	(3)	(4)	(5)
InterestEBITDA	-0.0105 (0.0066)	-0.0106 (0.0068)	-0.0103 (0.0067)		
DebtEquity				0.0005*** (0.0002)	
LiabEquity	0.0002** (0.0001)				0.0002** (0.0001)
ExcessLE		0.6571 (0.4612)			
Revenue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Asset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Constant	27.6857*** (0.2621)	27.4345*** (0.3249)	27.7159*** (0.2615)	27.6203*** (0.2483)	27.6197*** (0.2485)
Observations	4154	4154	4154	4444	4444
R-squared	0.01	0.01	0.01	0.01	0.01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significant at 10%;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

자료: 저자 작성

〈표 III-5〉에서는 통제변수로 매출액과 총자산을 고려하고, 〈표 III-6〉에서는 추가적으로 유형고정자산 비율, 무형자산 비율, 연구개발비 비율을 고려

하였다. 자료에서 무형자산 또는 연구개발비 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 이러한 변수를 고려한 <표 Ⅲ-6>에서는 관측치가 1,350여 개로 줄었다.

<표 Ⅲ-6> 회계기준 실효세율, 이자비율 및 부채비율: 분석 결과

GaapETRW	(1)	(2)	(3)	(4)	(5)
InterestEBITDA	-0.0116*** (0.0041)	-0.0116*** (0.0041)	-0.0116*** (0.0041)		
DebtEquity				-0.0007 (0.0006)	
LiabEquity	-0.0002 (0.0003)				-0.0003 (0.0003)
ExcessLE		-0.3343 (0.9592)			
Revenue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Asset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PPEAsset	-0.0184 (0.0335)	-0.0169 (0.0337)	-0.0186 (0.0335)	-0.0166 (0.0335)	-0.0169 (0.0335)
IntangAsset	-0.2000*** (0.0536)	-0.1979*** (0.0539)	-0.2001*** (0.0535)	-0.1967*** (0.0537)	-0.1969*** (0.0537)
RnDAsset	-0.4705*** (0.0774)	-0.4739*** (0.0783)	-0.4697*** (0.0774)	-0.4684*** (0.0773)	-0.4681*** (0.0774)
Constant	28.2492*** (1.1993)	28.2961*** (1.2110)	28.2190*** (1.1995)	28.0376*** (1.1975)	28.0348*** (1.1975)
Observations	1352	1352	1352	1357	1357
R-squared	0.05	0.05	0.05	0.04	0.04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significant at 10%;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

자료: 저자 작성

<표 Ⅲ-5>의 (1)부터 (3)은 각각 이자비용 비율을 포함하였고, 주요 독립 변수 중에서 추가적으로 (1)은 부채비율을 포함하고, (2)는 부채 한도 초과 더미를 포함하였다. 한편 (4)와 (5)는 이자비용 비율을 포함하지 않고 차입 금 비율과 부채비율을 각각 포함하였다. <표 Ⅲ-6>에서도 동일한 순서로 독립변수를 조합하였다.

〈표 Ⅲ-5〉와 〈표 Ⅲ-6〉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주요 독립변수들이 회계기준 실효세율에 미치는 효과는 이러한 변수들이 현금 실효세율에 미치는 효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이자비용 비율 변수의 계수가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고, 무형자산 및 연구개발비 비율을 통제변수로 고려할 때 (달리 말하면 이러한 변수를 누락하지 않을 정도로 활발하게 관련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 이러한 음(-)의 계수 추정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국적기업의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증가하면서 회계기준 실효세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무형자산 비율 및 연구개발비 비율을 통제하는 경우(또는 이러한 항목을 보고할 만큼 실질적인 무형자산 관리 및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계기준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도 가설 1을 지지하는 실증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표 Ⅲ-5〉와 〈표 Ⅲ-6〉의 (2)를 비교하면 부채 한도 초과 더미의 계수는 통제변수의 조합에 따라 상반된 부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두 경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부채 한도 초과 더미(세이프 하버 규정 만족 여부)와 실효세율 사이의 관계가 불확실하다는 가설 2에서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표 Ⅲ-6〉에서 보듯이, 회계기준 실효세율과 무형자산 비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는 〈표 Ⅲ-4〉에서 현금 실효세율과 무형자산 비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관찰하였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나. 시사점

지금까지 미국계 주요 다국적기업 그룹의 재무구조와 실효세율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미국계 다국적기업 그룹은 대부분 (98%) 이자비용 공제 한도인 EBITDA의 50% 이하에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이 약 5% 정도 있었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은 적어도 25% 정도 있었다.

가설 1에서 다국적기업 그룹의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증가하면 실효세율은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였고, 실증 분석 결과는 이러한 전망을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와 회계기준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 모두에 있어, 이자비용 비율이 증가할 때 실효세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무형자산 및 연구개발비 비중을 통제하면 이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가설 2에서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세이프 하버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실효세율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불확실하나, 만약 대다수 다국적기업이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는 대체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확신하기 어려웠고 제한적으로만 음(-)의 상관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단순히 세이프 하버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부채) 비율과 실효세율 사이의 관계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계열사 간 차입 거래를 통해 국제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다국적기업의 조세전략은 근본적으로 계열사들이 소재한 국가들 사이에 법인세율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저세율국에 소재한 계열사로 이자를 지급하여 국제적 세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수준은 국가 간 세율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미국에 있는 계열사(본사)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 있는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이 국가의 법인세율이 다른 국가의 세율보다 높다면 계열사간 차입거래를 통해 국제적 세부담률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 그룹이 우리나라와 다른 저세율국에 각각 계열사를 두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저세율국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국제적 세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국적기업 계열사들만을

따로 분리해서 분석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 그룹의 차입거래를 통한 조세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이용한 재무제표 자료에서 이자비용 및 부채가 다국적기업의 총이자비용 및 부채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감사 담당자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대상 계열사들이 서로 주고받은 이자비용 및 부채를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계처리에 의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과 실효세율 사이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는 점이 상당히 놀랍기도 하다.

이렇게 계열사 사이에 지급한 이자비용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국적기업 그룹 계열사 각각의 재무제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다국적기업 그룹의 계열사들은 비상장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서 재무제표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덧붙여, 특정 기업이 특정 기업 그룹의 계열사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 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실증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조세 환경하에서 다국적기업 그룹의 재무구조가 국제적으로 부담할 세금의 합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으로 분석해본다.

IV. 국제조세제도와 다국적기업 재무구조에 따른 세부담 분석

여기서는 다양한 국제조세 환경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재무구조 선택이 세금 부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다국적기업의 거주국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이 다른 나라(원천국)에 소재한 자회사의 운영 자금을 전액 출자로 조달하는 경우와 차입을 통해서도 조달하는 경우에 다국적기업의 총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다국적기업의 거주국이 경영참여소득 과세면제(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 중에서 일정 비율을 면세) 제도를 운용하는 상황에서 자회사의 재무구조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총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거주국(home country)은 h 로 표시한다. 그리고 원천국(source country)은 s 로 표시한다. 거주국 모회사의 EBITDA는 m_h 로, 원천국 자회사의 EBITDA는 m_s 로 나타낸다. 여기서 EBITDA란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로 번역하자면 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공제 전 이익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EBITDA를 기업이 현재의 자산과 영업활동으로부터 얼마나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로 해석한다.⁸³⁾

각종 세율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데, country 또는 country-pair를 하첨자로 구분한다. 법인세율은 t^c 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거주국 h 의 법인세율은 t_h^c 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t^d 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

83)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분석할 때는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EBITDA가 곧 이자비용 및 세금 납부 전 이익(EBIT)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세율은 t^i 로 표시한다. 그러면 원천국 s 에서 거주국 h 로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t_{sh}^d 이 되고,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t_{sh}^i 이 된다.

1. 거주지 과세원칙과 다국적기업 재무구조

가. 차입이 없는 경우

이제 다국적기업의 거주국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있다. 다국적기업은 거주국에 모회사, 원천국에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거주국 모회사가 원천국 자회사에 직접 전액 출자 방식으로 투자하였고, 자회사에는 차입금이 없다고 가정하자. 자회사는 이익을 모두 모회사로 배당한다.⁸⁴⁾ 이러한 국제조세제도와 자회사 재무구조하에서 다국적기업이 전 세계에서 부담할 세액을 계산하고 그 과정을 <표 IV-1>에서 요약하였다.

원천국 자회사가 원천국에서 부담할 세율은 $t_s^c + (1 - t_s^c)t_{sh}^d$ 이 된다. 원천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이익을 모두 배당으로 모회사에 송금할 때 배당 원천징수세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주국에서 모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FTC) 금액 C_h^d 을 거주국 세율 t_h^c 과 외국납부세율 $t_s^c + (1 - t_s^c)t_{sh}^d$ 중에서 더 작은 값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외국납부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외국 원천소득에 대해 거주국에서 납부할 세액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회사의 세액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모회사 거주국 세율로 과세한 금액에서 C_h^d 만큼을 공제한 것이 된다. 그러면 다국적기업이 전 세계에서 부담할 세액 T^d 는 모회사 세액과 자회사 세액을 합계한 것이다.

84) 거주국에서 피지배외국법인(CFC;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제도를 적용하여 자회사 유보금을 모두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비슷하게 분석할 수 있다.

〈표 IV-1〉 다국적기업 합계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전액 출자

구분	거주국 모회사	원천국 자회사
EBITDA	m_h	m_s
이자		0
이자 원천세		0
과세 소득	m_h	m_s
세율	t_h^c	$t_s^c + (1 - t_s^c)t_{sh}^d$
자회사 세액	$m_s [t_s^c + (1 - t_s^c)t_{sh}^d]$	
모회사 FTC	$C_h^d = m_s \min\{t_h^c, t_s^c + (1 - t_s^c)t_{sh}^d\}$	
모회사 세액	$(m_h + m_s)t_h^c - C_h^d$	
세액 합계 Global Tax	$T^d = (m_h + m_s)t_h^c - C_h^d + m_s [t_s^c + (1 - t_s^c)t_{sh}^d]$ (1) 만약 $t_h^c \leq t_s^c + (1 - t_s^c)t_{sh}^d$ 이면, $T^d = m_h t_h^c + m_s [t_s^c + (1 - t_s^c)t_{sh}^d]$. (2) 만약 $t_h^c > t_s^c + (1 - t_s^c)t_{sh}^d$ 이면, $T^d = (m_h + m_s)t_h^c$.	

자료: 저자 작성

나. 차입이 있는 경우

이제 거주국 모회사가 원천국 자회사에 출자하면서 일부 자금은 차입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자회사는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데, 그 금액이 EBITDA m_s 의 일정 비율인 πm_s 만큼이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π 는 자회사의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즉 이자/소득 비율)을 나타내는데, 자회사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자비용의 최대 비율을 뜻한다. 통상 이 비율은 원천국의 과소자본세제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자회사는 나머지 잉여금을 모두 모회사로 배당한다.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거주국은 다국적기업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이러한 국제조세제도와 자회사 재무구조하에서 다국적기업이 전 세계에서 부담할 세액 T^i 를 계산하여 〈표 IV-2〉와 같이 정리하였다.

자회사는 모회사 차입금에 대해 이자 πm_s 를 지급하고, 이자 원천세 $\pi m_s t_{sh}^i$ 를 납부한다. 모회사의 과세소득은 $m_h + \pi m_s$ 가 되고, 자회사의 과세소득은 $(1 - \pi)m_s$ 가 된다. 이러한 소득에 대해 자회사가 원천국에서 부

담할 세율은 $t_s^c + (1 - t_s^c)t_{sh}^d$ 이 된다.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원천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모두 배당으로 모회사에 송금할 때 배당 원천징수세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회사 세액(즉 외국납부세액)은 이자원천세액, 법인세액, 배당원천세액을 모두 합산한 것이 된다. 거주국에서 모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국 과세소득에 대해 거주국 세율로 과세한 금액(즉 공제 한도)과 외국납부세액 중에서 더 작은 금액이 되고,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_h^i 만큼이 된다. 모회사의 세액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을 합산하고 거주국 세율로 과세한 금액에서 C_h^i 만큼을 공제한 것이다. 그러면 다국적기업이 전 세계에서 부담할 세액은 모회사 세액과 자회사 세액을 합계한 것이다.

<표 IV-2> 다국적기업 합계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부분 출자(부분 차입)

구분	거주국 모회사	원천국 자회사
EBITDA	m_h	m_s
이자		πm_s
이자 원천세		$\pi m_s t_{sh}^i$
과세 소득	$m_h + \pi m_s$	$(1 - \pi)m_s$
세율	t_h^c	$t_s^c + (1 - t_s^c)t_{sh}^d$
자회사 세액	$(1 - \pi)m_s [t_s^c + (1 - t_s^c)t_{sh}^d] + \pi m_s t_{sh}^i$	
모회사 FTC	$C_h^i = m_s \min\{(1 - \pi)t_h^c, (1 - \pi)[t_s^c + (1 - t_s^c)t_{sh}^d] + \pi t_{sh}^i\}$	
모회사 세액	$(m_h + m_s)t_h^c - C_h^i$	
세액 합계 Global Tax	$T^i = (m_h + m_s)t_h^c - C_h^i + (1 - \pi)m_s [t_s^c + (1 - t_s^c)t_{sh}^d] + \pi m_s t_{sh}^i$ (1) 만약 $(1 - \pi)t_h^c \leq (1 - \pi)[t_s^c + (1 - t_s^c)t_{sh}^d] + \pi t_{sh}^i$ 이면, $T^i = (m_h + \pi m_s)t_h^c + (1 - \pi)m_s [t_s^c + (1 - t_s^c)t_{sh}^d] + \pi m_s t_{sh}^i$. (2) 만약 $(1 - \pi)t_h^c > (1 - \pi)[t_s^c + (1 - t_s^c)t_{sh}^d] + \pi t_{sh}^i$ 이면, $T^i = (m_h + m_s)t_h^c$.	

지금까지의 계산 결과로부터 다음 정리를 보일 수 있다.

정리 1. 거주국에서 거주지 과세원칙을 따르는데, 만약 $(1 - \pi)t_h^c > t_s^c + (1 - t_s^c)t_{sh}^d > t_{sh}^i$ 조건이 성립하면, 다국적기업이 전 세계에서 부담하는 세액이 자회사의 재무구조와 상관없이 결정된다.

증명. 주어진 조건에서 $T^d = T^i = (m_h + m_s)t_h^c$ 임을 보인다. 먼저 첫 번째 부등식이 성립하면, $t_h^c \geq (1 - \pi)t_h^c$ 이므로, $t_h^c > t_s^c + (1 - t_s^c)t_{sh}^d$ 이 된다. 그러면 <표 IV-1>의 (2)에 의해 $T^d = (m_h + m_s)t_h^c$ 이 된다. 이어서 두 번째 부등식이 성립하면, $t_s^c + (1 - t_s^c)t_{sh}^d > (1 - \pi)[t_s^c + (1 - t_s^c)t_{sh}^d] + \pi t_{sh}^i$ 조건이 성립하고, 첫 번째 부등식에 의해 $(1 - \pi)t_h^c > (1 - \pi)[t_s^c + (1 - t_s^c)t_{sh}^d] + \pi t_{sh}^i$ 이 된다. 그러면 <표 IV-2>의 (2)에 의해 $T^i = (m_h + m_s)t_h^c$ 이 된다.

앞의 정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거주국에서 다국적기업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 세율에 대해 일정한 부등식 조건이 성립하면, 자회사가 얼마나 이자비용을 지불하는지에 관계없이 다국적기업이 전 세계에서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리의 부등식 조건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일까? 만약 거주국 법인세율 t_h^c 가 40%, 이자비용 소득공제 한도 π 가 30%, 원천국 법인세율 t_s^c 가 24%, 원천국-거주국 조세조약에 의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t_{sh}^d 가 5%,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t_{sh}^i 가 5%라고 가정하면, 정리의 부등식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세율 조건하에서는 다국적기업이 자회사 재무구조에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 원천지 과세원칙과 다국적기업 재무구조

가. 차입이 없는 경우

이제 다국적기업의 거주국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영참여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면세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제도를 흔히 경영참여소득 과세면제, 더 간략하게는 참여면세(participation exemption) 제도라고 부른다. 참여면세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로는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있다. 참여면세 제도하에서는 면세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 소득에 대해 면세를 하면, 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국내 세액이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다국적기업은 거주국에 모회사, 원천국에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모회사는 자회사에 직접 전액 출자 방식으로 투자하였고, 자회사에는 차입금이 없다. 자회사는 이익을 전부 모회사로 배당한다. 거주국은 모회사가 받은 배당금(국의 경영참여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을 면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여기서 면세(익금불산입) 비율을 e 로 표시한다.

자회사가 원천국에서 부담할 세율은 $t_s^c + (1 - t_s^c)t_{sh}^d$ 이고, 세액은 $m_s [t_s^c + (1 - t_s^c)t_{sh}^d]$ 이다. 자회사가 세후 이익을 모두 모회사에 배당하면, 모회사가 받은 국외 배당소득은 $m_s(1 - t_s^c)(1 - t_{sh}^d)$ 만큼이 된다. 국외 배당소득에 대한 거주국의 면세 비율이 e 이므로 거주국은 $m_s(1 - t_s^c)(1 - t_{sh}^d)(1 - e)$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그 세율은 t_h^c 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거주국에서 모회사의 세액은 $m_h t_h^c + m_s(1 - t_s^c)(1 - t_{sh}^d)(1 - e)t_h^c$ 만큼이 된다. <표 IV-3>에서 보듯이 모회사와 자회사의 세액을 합계하여 다국적기업이 부담할 총세액 T^{de} 를 계산할 수 있다. 만약 거주국에서 다국적기업의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완전 면세하면, 즉 $e = 1$ 이면 다국적기업의 합계 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T^{de} = m_h t_h^c + m_s [t_s^c + (1 - t_s^c)t_{sh}^d]$$

〈표 IV-3〉 다국적기업 합계 세액: 경영참여소득면세와 전액 출자

구분	거주국 모회사	원천국 자회사
EBITDA	m_h	m_s
이자		0
이자 원천세		0
과세 소득	m_h	m_s
세율	t_h^c	$t_s^c + (1-t_s^c)t_{sh}^d$
자회사 세액	$m_s [t_s^c + (1-t_s^c)t_{sh}^d]$	
모회사 FTC	0	
모회사 세액	$m_h t_h^c + m_s (1-t_s^c)(1-t_{sh}^d)(1-e)t_h^c$	
세액 합계 Global Tax	$T^{de} = m_h t_h^c + m_s (1-t_s^c)(1-t_{sh}^d)(1-e)t_h^c + m_s [t_s^c + (1-t_s^c)t_{sh}^d]$ 만약 $e = 1$ 이면, $T^{de} = m_h t_h^c + m_s [t_s^c + (1-t_s^c)t_{sh}^d]$.	

자료: 저자 작성.

나. 차입이 있는 경우

이어서 거주국 모회사가 원천국 자회사에 투자하면서 일부 투자금은 출자로, 나머지는 대출로 투자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회사는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데, 그 이자비용이 EBITDA m_s 의 일정 비율인 πm_s 만큼이다. 자회사는 이자비용과 세금을 낸 후 남은 이익을 모두 모회사에 배당한다. 거주국은 자회사가 원천국에서 납부한 이자 원천세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없다. 그러므로 모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거주국에서 납부할 세액과 원천국에서 이자 원천세로 납부한 세액 중에서 더 작은 값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자회사 세액, 모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 모회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전 세계 세액 합계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세액을 더하여 T^{ie} 만큼이 된다. 만약 거주국에서 다국적기업의 경영참여소득에 대해 완전 면세하면, 즉 $e = 1$ 이면 다국적기업의 합계 세액 T^{ic}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T^{ie} = (m_h + \pi m_s)t_h^c - C_h^{ie} + (1 - \pi)m_s [t_s^c + (1 - t_s^c)t_{sh}^d] + \pi m_s t_{sh}^i$$

지금까지의 계산 결과를 <표 IV-4>에서처럼 정리할 수 있다.

<표 IV-4> 다국적기업 합계 세액: 경영참여소득면세와 부분 출자(부분 차입)

구분	거주국 모회사	원천국 자회사
EBITDA	m_h	m_s
이자		πm_s
이자 원천세		$\pi m_s t_{sh}^i$
과세 소득	$m_h + \pi m_s$	$(1 - \pi)m_s$
세율	t_h^c	$t_s^c + (1 - t_s^c)t_{sh}^d$
자회사 세액	$T_s^{ie} = (1 - \pi)m_s [t_s^c + (1 - t_s^c)t_{sh}^d] + \pi m_s t_{sh}^i$	
모회사 FTC	$C_h^{ie} = \pi m_s \min\{t_h^c, t_{sh}^i\}$	
모회사 세액	$T_h^{ie} = (m_h + \pi m_s)t_h^c + (1 - \pi)m_s(1 - t_s^c)(1 - t_{sh}^d)(1 - e)t_h^c - C_h^{ie}$	
세액 합계 Global Tax	$T^{ie} = T_s^{ie} + T_h^{ie}$	

자료: 저자 작성

정리 2. 거주국에서 다국적기업의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완전 면세하고, 세율 조건 $t_h^c \geq t_{sh}^i$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i) 만약 $t_h^c \geq t_s^c + (1 - t_s^c)t_{sh}^d$ 이면, 다국적기업은 자회사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더라도 전 세계 세액을 줄일 수 없다. (ii) 만약 $t_h^c < t_s^c + (1 - t_s^c)t_{sh}^d$ 이면, 다국적기업은 자회사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여 전 세계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증명. 거주국에서 다국적기업의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완전 면세하므로 $e = 1$ 이고, 앞에서 이미 보인 바와 같이, 다국적기업의 세액 합계는 자회사의 재무구조에 따라 각각 T^{de} 와 T^{ie} 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t_h^c \geq t_{sh}^i$ 이므로 $C_h^{ie} = \pi m_s t_{sh}^i$ 이어서, T^{ie} 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T^{ie} - T^{de} = \pi m_s t_h^c - \pi m_s [t_s^c + (1 - t_s^c)t_{sh}^d]$$

여기서 만약 $t_h^c \geq t_s^c + (1 - t_s^c)t_{sh}^d$ 이면, $T^{ie} \geq T^{de}$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국적기업은 자회사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부담할 세금을 줄이지 못한다. 한편 만약 $t_h^c < t_s^c + (1 - t_s^c)t_{sh}^d$ 이면, $T^{ie} < T^{de}$ 임을 알 수 있다. 이때는 자회사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이 전 세계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국 법인세율 t_h^c 가 40%, 원천국 법인세율 t_s^c 가 24%, 원천국-거주국 조세조약에 의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t_{sh}^d 가 5%,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t_{sh}^i 가 5%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t_h^c \geq t_{sh}^i$ 이 성립하고, $t_h^c \geq t_s^c + (1 - t_s^c)t_{sh}^d$ 이 성립하여, $T^{ie} \geq T^{de}$ 이 된다. 즉 이러한 세율 조건 하에서는 다국적기업이 자회사의 재무구조를 계열사 차입금을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부담 세액을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세율은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거주국의 법인세율이 27%로 낮아지면, $t_h^c < t_s^c + (1 - t_s^c)t_{sh}^d$ 이 성립하여, $T^{ie} < T^{de}$ 이 된다. 즉 거주국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다국적기업은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도록 만들어 전 세계 합계 세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시사점

지금까지 다국적기업 그룹의 재무구조가 국제적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두 계열사가 각각 거주국의 모회사와 원천국의 자회사로 있는 상황을 상정하였고,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거주국의 과세방식에 따라 경우를 구분하였다.

먼저 거주국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때는 통상적인 세율 조건하에서 원천국 자회사의 재무구조가 다국적기업 그룹의 전 세계 세금 부담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세율 조건하에서는 거주국에서의 법인세율이 충분히 높아서 차입을 통해 원천국에서 절감한 세금만큼을 거주국에서 다시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주국에서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때는, 즉 참여면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을 때는, 거주국 법인세율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원천국에서 차입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하여 국제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었다. 특히 거주국의 법인세율이 원천국의 법인세율과 배당소득 원천세율을 합산(gross-up)한 세율보다 작은 경우, 다국적기업 그룹은 원천국 자회사가 차입거래를 통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세부담을 낮출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다국적기업 그룹의 계열사가 두 개만 있는 모형을 기초로 한 이론적 분석은,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 그룹이 많은 수의 계열사들을 거느리며, 계열사들 사이에 지배구조와 재무구조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이론 모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뿐 아니라, 중간지주회사(예를 들어, 모-자회사 지배구조상의 경유회사) 또는 자금조달(출자 또는 대출) 전문 계열사가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계열사의 형태를 고려할 경우 이론적 분석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단순한 모형에서도 저세율국에 소재한 자금조달 전문 계열사가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제적 세금 절감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볼 수는 있다. 지금까지는 암묵적으로 모회사가 있는 거주국을 '그룹 본부'가 있는 국가라고 보았다. 이제 모회사를 중간지주회사 또는 자금조달 전문 계열사로 생각해보자. 대체로 이러한 계열사들은 저세율국에 있고, 이러한 국가들은 참여면세 제도를 운용하며 조세조약을 통해 이자에 대한 원천세율도 낮게 설정한다. 그러면 정리 2에서 (ii)의 조건이 성립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은 저세율국에 있는 자금조달 계열사가 원천국 자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의 형태로 소득을 이전 받도록 하여 국제적인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천국은 자회사의 이자비용 공제 한도 π 를 조정하여 세원 잠식을 방지할 수 있다.

V. 결론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는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에 한도를 설정하여, 한도를 넘어서는 차입금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를 법인 소득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한다.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초과분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있어 상당히 강한 과소자본세제를 갖추고 있는 셈이지만, 최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제도의 형태와는 약간 동떨어진 점도 있다.

주요국의 과소자본세제 현황을 보면, 대체로 소득(EBITDA; 이자, 세금,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 전 소득)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중심적인 기준으로 삼아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OECD BEPS 방지 프로젝트에서도 이자비용 비율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은 1986년부터 소득잠식(earnings stripping) 방지 규정을 도입하여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50% 이하인(즉 이른바 ‘세이프 하버’ 규정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비용 공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EBITDA의 50% 이하로만 이자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50%를 초과하는 이자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독일은 2008년부터 소득잠식(earnings stripping) 방지 규정을 도입하였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독일 계열사가 그룹의 평균적인 부채비율을 감안한 기준(그룹 평균 부채비율에 2%p를 더한 값)보다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EBITDA의 10% 이하이면 공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상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EBITDA의 30% 이하인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고, 30%를 초과하는 이자는 공

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은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 및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모두 기준으로 삼는다. 2013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처럼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만을 기준으로 하였고, 2013년부터는 두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공제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이 3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분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과,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분 이자지급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의 이자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이자비용 공제제도를 비교하면, 공제를 제한하는 기준을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로 삼느냐 또는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로 삼느냐에 따라 제도를 큰 틀에서 구분할 수 있으며, 차입 또는 이자 지급의 대상을 특수관계인으로만 제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각각의 기준 비율을 어느 수준에서 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제도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마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각각의 기준이 다국적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과 어떤 상관성을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실증 분석을 위해 톰슨 로이터스 아이콘(Thomson Reuters Eikon)에서 추출한 미국계 주요 다국적기업(S&P 500 지수 구성 기업) 그룹의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다국적기업의 부채(차입금) 비율, 이자비용 비율과 실효세율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미국계 다국적기업 그룹은 대부분(98%) 이자비용 공제 한도인 EBITDA의 50% 이하에서 이자를 지급하였다. 한편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이 약 5% 정도 있었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은 적어도 25% 정도 있었다.

실증 분석에 앞서 다국적기업 그룹의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증가하면 실효세율은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였고, 실증 분석 결과는 이러한 전망을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보는 경

우와 회계기준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 모두에 있어, 이자비용 비율이 증가할 때 실효세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무형자산 및 연구개발비 비중을 통제하면 이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덧붙여, 다국적기업 그룹이 세이프 하버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실효세율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불확실하나, 만약 대다수 다국적기업이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여기서 분석한 결과만으로는 대체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확신하기 어려웠고, 제한적으로만 음(-)의 상관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단순히 세이프 하버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부채) 비율과 실효세율 사이의 관계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실증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조세 환경하에서 다국적기업 그룹의 재무구조가 국제적으로 부담할 세금의 합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 모형에서는 두 계열사가 각각 거주국의 모회사와 원천국의 자회사로 있는 상황을 가정하였고,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거주국의 과세방식에 따라 경우를 구분하였다.

먼저 거주국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때는 통상적인 세율 조건하에서 원천국 자회사의 재무구조가 다국적기업 그룹의 전 세계 세금 부담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세율 조건하에서는 거주국에서의 법인세율이 충분히 높아서 차입을 통해 원천국에서 절감한 세금만큼을 거주국에서 다시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주국에서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때는, 즉 참여면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을 때는 거주국 법인세율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원천국에서 차입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하여 국제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었다. 특히 거주국의 법인세율이 원천국의 법인세율과 배당소득 원천세율을 합산(gross-up)한 세율보다 작은 경우, 다국적기업 그룹은 원천국 자회사가 차입거래를 통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세부담을 낮출 수 있었다.

이러한 모형에서 모회사를 저세율국에 소재한 중간지주회사 또는 자금조달 전문 계열사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다국적기업 그룹은 저세율국에 있는 자금조달 계열사가 원천국 자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의 형태로 소득을 이전 받도록 하여 국제적인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원천국은 자회사의 이자비용 비율 한도 π 를 조정하여 세원 잠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국은 이미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비용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자비용 공제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룬 OECD/G20의 BEPS Action 4 최종 보고서에서도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 제도 운용을 권고하였다. 미국계 주요 다국적기업 그룹의 재무제표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에서도 다국적기업 그룹의 실효세율과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 사이에서 음(-)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론 분석에서도 다국적기업 그룹이 저세율국에 소재한 자금조달 전문 계열사로부터의 차입 거래를 이용하여 국제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원천국은 이자비용 비율 한도를 낮추어 세원 잠식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만약 이러한 제도 전환에 따른 기업 경영상의 혼란과 추가적인 세금 부담의 우려를 줄이고자 한다면, 미국 과소자본세제의 세이프 하버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을 마치 세이프 하버 규정처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이 2 배 이하이어서, 현행 규정에 따라 모든 이자지급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던

다국적기업 그룹의 우리나라 계열사는 고스란히 모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도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 부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차입금 비율이 2배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계열사는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한 한도에 따라,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이자지급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 한도마저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 이자지급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하면,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이 한도인 2배를 초과하면서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한도 역시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계열사만 모든 이자지급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한도를 어느 수준에서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자비용 공제가 제한되는 기업이 결정되겠지만, 통상적인 한도에서 공제가 제한되는 기업의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미국계 주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 한정하여 볼 때,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자비용 공제제도 전환을 검토할 때는 자료 수집이 어렵겠지만 다국적기업 그룹의 우리나라 계열사에 대한 재무 자료를 수집하여 구체적인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한도에 따라 제도 전환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이에 대해 분석하지 못하였지만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이자비용 공제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자비용 공제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의 물꼬를 튼 보고서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직도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주제가 많이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이자비용 공제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Ⅰ) -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 이행 과제」 2015. 11. 19.
- 안경봉,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3, 한국세법학회, 1997, pp.112~176.
- 안세준·김준현·정훈,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세법연구』 14-0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안종석, 「BEPS 프로젝트의 이해: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재정포럼』, 16-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pp.6~27.
- 이진영, 「국제적 자본이동과 과소자본세제」, 『조세법연구』, 한국세법학회, 2008.
- 이찬근·김성혁, 「국제조세체제와 BEPS 현상」, 『한국무역학회지』, 제40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15.08.
- 이창희, 「과소자본세제의 현황과 전망」,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4호, 2007, pp.63~87.
- Ana Paula Dourado & Rita de la Feria, “Thin capitalization rules in the context of the CCCTB,” Oxford University Centre for Business Taxation, 2008.
- Andrea Striegel, Country Survey-Germany, IBFD, 2008, p.328.
- Bruno Gouthiere, “A Comparative Study of the Thin Capitalization Rules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nd Certain Other States,” *EUROPEAN TAXATION*, September-October 2005, pp.367-369.
- Buettner, T., M. Overesch, U. Schreiber and G. Wamser, “The Impact of

- Thin-Capitalization Rules on the Capital Structure of Multinational Firm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6, 2012, pp.930-938.
- Buettner, T. and G. Wamser, “Internal Debt and Multinational Profit Shifting: Empirical Evidence from Firm-Level Panel Data,” *National Tax Journal*, 66, 2013, pp.63-96.
- Desai, M. A., C. F. Foley, and J. R. Hines, Jr., “A Multinational Perspective on Capital Structure Choice and Internal Capital Markets,” *Journal of Finance*, 59, 2004, pp.2451-2487.
- Desai, M. A. and D. Dharmapala, “Interest Deductions in a Multijurisdictional World,” CESifo Working Paper No. 5350, 2015.
- Dyreng, S. D., M. Hanlon, and E. L. Maydew, “Long-Run Corporate Tax Avoidance,” *Accounting Review*, 83, 2008, pp.61-82.
- Earnst&Young, “2012 Japan tax reform proposals introduce earnings stripping rules,” 2011. 12.
- Earnst&Young, 2016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p.1600.
- EUROPEAN TAXATION, “Comments on ECJ, Lankhorst-Hohorst GmbH, Case C-324/00, 12 December 2002,” May 2003.
- Gallemore, J. and E. Labro,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l Information Environment for Tax Avoida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0, 2015, pp.149-167.
- Haufler, A. and M. Runkel, “Firms’ Financial Choices and Thin Capitalization Rules under Corporate Tax Competi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56, 2012, pp.1087-1103.
- IBFD, Country Analysis: Australia-Corporate Taxation-Country Analysis-10. Anti-Avoidance-10.3 Thin Capitalization,
- _____, Country Analysis: Japan, Corporate Taxation 10.3 Thin Capitalization,
- _____, Country Analysis: United States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Surveys -7. Anti-Avoidance -7.3.1. General rule

_____, Country Analysis: Germany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Surveys
 - 10. Thin Capitalization

KPMG, “Japanese Earnings Stripping Rules,” *KPMG Japan tax newsletter*,
 2012. 9. 6.

OECD, “Limiting Base Erosion Involving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ACTION 4: 2015 Final Report,” Paris: OECD
 Publishing, 2015a.

_____,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July, 2013.

_____, *BEPS 2015 Executive Summary*, 2015b, pp.15~17.

PwC, *Worldwide Tax Summaries Corporate Taxes 2015/16*, 2015.

Stephan Eliers, *Tax Treatment of Interest for Corporation*, Chapter 8,
 IBFD, 2013.

Yoshihito Ueno, “Japan’s Proposed Earnings Stripping Rules,” tax notes
 international, Vol.65 No.1, taxanalysts, 2012. 1. 23.

〈웹사이트 및 기타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검색일자: 2016. 4. 6.)

국세법령정보시스템, www.txsi.homerax.go.kr/docs/main.jsp, (검색일자: 2016.
 7. 1.)

미국법령정보시스템,
[http://uscode.house.gov/view.xhtml?num=0&edition=prelim&req=gra
 nuleid:USC-prelim-title26-section163](http://uscode.house.gov/view.xhtml?num=0&edition=prelim&req=granuleid:USC-prelim-title26-section163), (검색일자: 2016. 10. 12.)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newworld.moleg.go.kr>, (검색일자: 2016. 7. 19.)

애플, www.apple.com, (검색일자: 2016. 7. 15.)

유럽사법재판소, www.curia.europa.eu, (검색일자: 2016. 7. 14.)

『중앙일보』, 「美 ‘조세회피용 M&A’ 강력규제 … 화이자-엘러 간 직격탄」,
 2016. 4. 6., <http://news.joins.com/article/19848260#none>, (검색일자:
 2016. 7. 5.)

호주 국세청, www.ato.gov.au/Business/Thin-capitalisation/,

(검색일자: 2016. 10. 7.)

Financial Times, “Vanessa Houlder and Vincent Boland, ‘Corporate tax: The

\$240bn black hole,’” 2015. 11. 24., [http://www.ft.com/intl/cms/s/0/](http://www.ft.com/intl/cms/s/0/86567a32-91d5-11e5-bd82-c1fb87bef7af.html#axzz40qrsfLgM)

[86567a32-91d5-11e5-bd82-c1fb87bef7af.html#axzz40qrsfLgM](http://www.ft.com/intl/cms/s/0/86567a32-91d5-11e5-bd82-c1fb87bef7af.html#axzz40qrsfLgM),

(검색일자: 2016. 2. 22.)

IBFD, www.ibfd.org, (검색일자: 2016. 10. 7.)

The Japan Tax Site, www.japantax.org, (검색일자: 2016. 7. 20.)

OECD 대표부, <http://oecd.mofa.go.kr/korean/eu/oecd/main/index.jsp>,

(검색일자: 2016. 2. 22.)

다국적기업 이자공제제도 개선방향 연구

홍성훈 · 정재호

본 보고서에서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이자비용 공제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한다. 통상적으로 다국적기업 그룹은, 계열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인세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자비용 공제, 전략적인 이자율 설정, 혼성금융상품 거래, 거주국 과세이연 등을 결합하여 계열사 간 차입거래 및 이자지급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먼저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계 주요 다국적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이자비용 비율과 실효세율 사이에 상당히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국적기업 그룹의 재무구조와 조세부담에 대한 이론 모형을 분석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의 저세율국 계열사가 원천국 자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의 형태로 소득을 이전하여 국제적으로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원천국이 자회사의 이자비용 비율 한도를 조정하여 세원 잠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현행 이자비용 공제제도를 이자비용 비율을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Thin Capitalization Rules and Interest Deduction for Multinational Firms

Sunghoon Hong, Jaeho Cheung

We study how to improve interest deduction rules to act against the abuse of interest deduction for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We use firm-level data of American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 tax rates and interest-to-EBITDA ratio. Overall we find that the interest-to-EBITDA ratio i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related to cash and book effective tax rates. We also examine a theoretical model where a multinational enterprise can choose a capital structure by mixing debt and equity to minimize global tax burden. In this model we find that multinational enterprises can shift their profits to subsidiaries in low-tax jurisdictions by abusing interest deduction rules. However, it also turns out that tax authorities in source countries can regulate such abuse of rules by setting a tighter cap on interest-to-EBITDA ratio.

■ 저자약력

홍성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재호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윤민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안승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조승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특수전문직
유현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특수전문직

연구보고서 16-06

다국적기업 이자공제제도 개선방향 연구

발행	행	2016년 12월 30일
저자	자	홍성훈·정재호
발행인	인	박형수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ipf.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가	5,000원
조판 및 인쇄	쇄	고려씨엔피 (02)2277-1508/9
I S B N		978-89-8191-843-9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